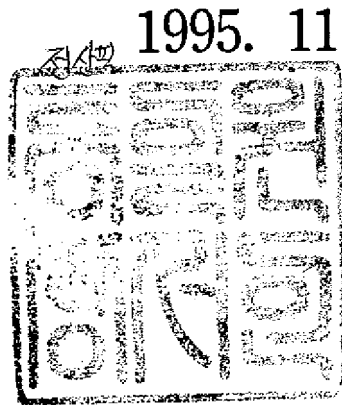


ps-45-15

법률로 본 독일 통일

1892.11
통독(1940-925)



339P
26cm

1995. 11
 통독(1940-925)
 339P
 26cm

통 일 원

- 이 책자는 주독한국대사관이 작성·송부한 자료를 통일원이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발간한 것입니다.
- 이 책자는 통독 전·후 법률분야 통합 사례에 관한 최근 자료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통 일 정 책 실

책을 내면서

독일의 분단과 통일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법적·제도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독일은 분단시절 이미 동서독간의 상호관계를 법률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을 뿐 아니라, 통일 및 그 후의 내부통합과정에 있어서도 모든 분야에 걸쳐 법규로 그 방향과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통일에 따르는 혼란을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3단계 통일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0년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면서 살아 온 남북한이 하나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화해협력하고 교류하면서 서로 다른 제도를 비슷하게 접근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통일에 따른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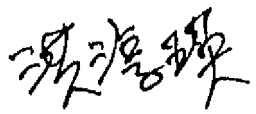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통일이 될 경우에도 우선 시급한 것은, 남북한의 법과 제도를 주어진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독대사관은 독일 통일 및 내부통합과 관련하여 개정·제정된 법률자료를 수집, 주요내용을 요약한 「법률로 본 독일 통일」을 펴 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먼저 분단시절부터 현재까지 독일 통일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개론이 서술되어 있으며, 국가조약, 통일조약 및 그 이후의 통합관련 법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법률마다 제정날짜 및 연방관보번호를 부기하여 덤으로써 법률원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무쫘록 이 책자가 우리의 분단 상황을 관리하고 통일을
대비하는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5. 10. 17

주독대사 

차 례

제 1 장 : 서론 - 법률로 본 독일 통일.....	1
1. 통일전 분단극복을 위한 독일문제 관련 규정.....	3
2. 통일을 위한 법적 기초.....	6
3. 통일후 내부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제정.....	11
4. 본 책자의 구성.....	12
제 2 장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국가조약).....	15
제 3 장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독일 통일의 완성에 관한 조약 (통일조약).....	29
1. 조약 본문.....	31
2. 연방법적용에 관한 특별경과규정(부속문서 I).....	35
3. 동독법 중 계속 유효한 법률(부속문서 II).....	55

제4장 : 1990-1995년간 각 부처별 통합관련 개정·제정된 법률.....	65
1. 연방외무부 소관.....	67
2. 연방내무부 소관.....	81
3. 연방법무부 소관.....	115
4. 연방재무부 소관.....	152
5. 연방경제부 소관.....	197
6. 연방농림부 소관.....	207
7. 연방노동사회부 소관.....	216
8. 연방국방부 소관.....	241
9. 연방청소년·여성·보건부 소관.....	243
10. 연방교통부 소관.....	259
11. 연방환경부 소관.....	266
12. 연방건설부 소관.....	268
13. 연방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76

부록.....	281
1. 동서독기본조약.....	283
2.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285
3. 통일조약.....	305
4. 「2 + 4 조약」	334

제 1 장 : 서론 - 법률로 본 독일 통일

1. 통일전 분단극복을 위한 독일문제 관련 규정
2. 통일을 위한 법적 기초
3. 통일후 내부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제정
4. 본 책자의 구성

1. 통일전 분단극복을 위한 독일문제 관련 규정

1949년 5월 23일 서독정부가 수립되고 동년 10월 9일 동독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전승4대국의 점령하에 있던 독일은 분단상태에 접어들었다. 그 후 서독은 통일문제를 미해결된 독일문제로 파악하고 국내외의 상황에 맞추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갔다.

독일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법률제도로는 기본법, 베를린협정, 통행협정, 동서독기본조약, 대외관계조약 등을 들 수 있다.

서독은 우선 기본법 전문에서 「모든 독일국민에게는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이 요청된다」고 하여 독일국민 모두에게 통일이라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나아가 기본법은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제23조)과 동시에 독일국민 전체가 통일을 위해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둠(제146조)으로써 통일의 방법까지도 제시하였다. 기본법 발효후 40여년간 동·서독은 대립과 경쟁, 공존과 협력 사이를 오가면서 분단고통을 극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아데나우어 수상의 「힘의 우위」 정책으로 인해 양독관계가 긴장되어 있었을 때에도 동·서독은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사용지역간의 교역협정(베를린협정)」을 체결·시행하였다. 동 협정은 양독간의 상품, 용역, 지불거래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0년 6월 국가조약에 의하여 최종 폐기될 때까지 수차례 개정되면서 쌍방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베를린협정이 양독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법적 기초로서 자리잡은 반면 인적교류를 위한 법적 장치로는 베를린 장벽 설치후 1963년 12월 7일 서베를린정부와 동독 사이에 체결된 「통과사증협정」, 1971년 12월 17일 동서독 정부간에 체결된 「통행협정」, 동년 12월 20일 서베를린정부와 동독사이에 체결된 「여행 및 방문교류협정」, 그리고 1972년 5월 26일 동서독 정부간에 체결된 「교통조약」 등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이 양독정부는 정부수립후 20여년간 각 개별협정을 통하여 그때그때마다 상호관계를 규정하며 교류해 왔다.

이에 반하여 1972년 12월 11일 체결된 「동서독기본조약」은 그동안 불명확한 상태에 놓여있던 동·서독 관계를 포괄적이고도 명확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동조약에서 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상호경제선을 존중하는 대신 양자의 관계를 국제법상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로 규정하였다. 이로써 쌍방은 단독대표권을 포기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동 조약의 성격에 대하여 동독은 동·서독이 별개의 국가로 되었다는 국가성에 초점을 두고 독일문제의 종결을 주장한 반면, 서독은 동서독관계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독일문제의 미해결상태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기본조약의 성격에 대한 쌍방간의 입장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독관계의 설정이 과거보다 훨씬 더 분명해진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동·서독(특히 동독)은 보다더 활기찬 자세로 쌍방관계의 실질적 진진을 위한 협상에 임하게 되었고 그 후 보건, 체육, 우편, 문화, 과학, 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협정이 체결되어 상호거리를 좁히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동·서독의 관계설정 및 발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승 4대국 및 주변국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요소였다. 1949년 서방 3개 점령지역에 서독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완전한 독립정부로 보기 어려웠다. 그후 1952년 서방 3개 점령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Bonn협정」 및 1954년 독일연방공화국내의 점령체제의 종료에 관한 「파리의정서」에 따라 서독은 비로소 대내외적으로 하나의 주권국가로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3대국은 상기협정을 통해 독일통일 및 강화조약 체결, 베를린 및 전체독일에 대한 권한과 책임, 군대주둔권 등을 보유함으로써 독일문제에 계속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구소련 역시 동독을 승인하면서 동독내에 안전보장 및 4대국의 의무에 관한 권한을 보유한다고 선언함으로써 독일문제에 계속 관여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처럼 독일문제는 국제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미해결과제로 남게되어 동·서독관계에 시종일관 영향을 미쳤다.

상기협정 이외에 통일당시까지 독일문제와 관련되어 대외적으로 체결된 주요협정으로는 소위 「동방조약」 과 「헬싱키 원칙」을 들 수 있다. 동방조약은 1970년부터 1973년간 서독이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구소련(1970. 8. 12), 폴란드(1970. 12. 7), 체코슬로바키아(1973. 12. 11)와 체결한 조약을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양독간 통행협정(1971. 12. 17/ 1972. 5. 26), 동서독기본조약(1972. 12. 21), 베를린 4대국협정(1971. 9. 3) 등도 동방조약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75년 7월 30일 구주안보협력회의(CSCE)가 헬싱키에서 최종결의한 의정서는 동·서독관계의 진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 통일을 위한 법적 기초

「동서독기본조약」과 「헬싱키의정서」가 동서독 국경을 상호존중하면서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규정한 기본틀이 되었다면, 「국가조약」과 「통일조약」 및 「2+4조약」은 동·서독 국경을 철폐하고 내적·외적으로 독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통일을 이룩하도록 규정한 기본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국가조약 (동서독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1989년 여름부터 시작된 동독지역의 시민운동과 대규모 이주민 발생, 베를린장벽의 붕괴 등 일련의 사태에 직면한 동서독 정부는 Modrow의 조약공동체 구성, Kohl의 10단계 통일방안 등에서 보듯이 과거 독일정책의 연장선에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동독주민들의 조속한 통일욕구, 계속되는 이주민 증가, 동독 국가권위의 붕괴, 구소련의 독일통일 허용 조짐 등 제반상황이 급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재무부는 1990년 1월부터 화폐통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1990년 2월 13일 Kohl - Modrow 회동에서 Kohl은 동독이 기본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동독정부가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라는 조건하에 경제통합과 화폐통합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0년 4월 24일 Kohl - de Maiziere 회동에서 1990년 7월 1일부터 화폐·경제·사회통합을 이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동서독 정부는 4월 25일- 5월 17일간 6차례의 전문가 회의와 소규모 회의를 거쳐 5월 18일 「화폐·경제·사회동맹을 창설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동 조약은 동·서독 의회의 비준을 받아 1990년 7월 1일 발효되었다.

동 조약은 전문, 본문 38개조, 지도원칙(동독의 법체계를 자유·민주·연방국가체제에 동화시키는 기준), 화폐통합과 화폐교환(부속문서 I), 동독이 시행하여야 할 서독의 법률(부속문서 II), 동독이 폐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III), 동독이 새로 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IV),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V), 통합후 동독이 계속 제정해야 할 규정(부속문서 VI), 기타 개인신상정보 전달, 중재법원, 민간투자자의 소유권 취득(부속문서 VII - IX) 등으로 되어있다.

동 조약은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통일의 첫단계이며 전승4대국의 유보권을 인정한 점에서 독일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통일조약 제40조 1항에서 동 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국가조약 규정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국가조약은 통일조약의 일부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국가조약은 화폐·경제·사회통합관련규정 이외에도 동 조약 2조에서 “자유, 민주, 연방, 법치국가 및 사회적 기본질서”에 관한 선언을 하고 지도원칙에 관한 공동의정서에서 사회주의적 사회질서 및 국가질서에 기초한 규정들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독헌법을 배제하고 있다. 실제로 동독정부는 국가조약의 내용이 동독헌법과 모순되는 일을 피하기 위해 동 조약 발효전인 1990년 6월 17일에 이미 헌법을 개정하여 동 조약의 내용을 모두 수용한 바 있다. 이 점에서 국가조약은 헌법조약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통일조약(동서독간 독일통일의 완성에 관한 조약)

국가조약 체결 이전인 1990년 5월 - 6월 동서독은 통일조약에 관한 기본방침을 교환하기 위해 사전접촉을 가졌으며

동 7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 8월 6일 동 조약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어서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의회는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기본법 제23조에 입각하여 독일민주공화국이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적용영역으로 가입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의결함으로써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신속한 결단 요구에 부응하였다.

4차례의 회담을 거쳐 체결된 동 조약은 동년 8월 31일 동·서독 정부간에 조인되고 9월 20일 동·서독 의회의 비준을 거쳐 10월 3일 마침내 발효하였다.

통일조약은 전문, 9장 45개조의 본문과 각 조의 적용기준을 명시한 의정서, 서독법 적용에 관한 특별경과규정(부록 I), 동독법률의 효력지속에 관한 특별경과규정(부록 II), 미해결 재산권에 관한 양독정부의 공동선언(부록 III), 그리고 동 조약의 실행을 위한 양독정부간의 합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전문(前文)과 제1장 가입의 효력, 제2장 기본법, 제3장 법의 동화, 제4장 국제법적 조약 및 협정, 제5장 행정과 사법, 제6장 공공재산과 채무, 제7장 노동, 사회보장, 가족, 여성, 보건, 환경보호, 제8장 문화, 교육, 과학, 체육, 제9장 경과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일조약은 구동독의 법률체계를 서독의 기본법질서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었으므로 동독지역의 법체계도 종래 서독의 경우처럼 ①기본법과 직접 발효되는 유럽공동체법 ②연방법 ③주법의 순서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조약은 제II장(제3조 - 제7조)에서 기본법이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것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약 제10조에서는 EU 공동체에 관한 조약들과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적 합의사항들 그리고 EU법에 근거하여 서독에서 제정한 법도 동독지역에 적용되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조약 제8조에서는 연방법을 동독 및 동베를린지역에 확대적용하기로 규정하였다. 다만 동독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방 각 부처는 동독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폐기해야 할 법률,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을 확정하여 부록I에 수록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법률과 시행령의 수많은 조항이 개정·폐기·보완·유보되었다.

나아가 통일조약 제9조는 동독법의 계속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동독법은 기본법의 권한배분 질서에 의하여 주법에 해당하는 것이거나, 연방법에 해당하더라도 연방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규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이면 예외적으로 주법으로서 계속 유효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주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갖게 된 동독법은 상위 법체계인 기본법과 EU법, 연방법에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조약상 별도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동독법의 계속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통일조약 부록 II에서는 기본법의 권한배분질서에 의하여 연방법률로서 효력을 가질 동독의 법률을 모두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열거된 동독법률은 대부분 국가조약 체결을 전후하여 제정된 것으로 각 부처 소관마다 계속 적용되는 법률, 개폐한 법률,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다.

통일조약은 지금까지 동서독관계에 존재하던 미해결과제를 모두 해결하고 기본법에 제시된 방법대로 기본법이 부여한 통일과업을 완수함으로써 독일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3) 2+4조약 (독일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

통일조약은 독일문제의 내적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장

침입에 비하여 2+4조약은 외적측면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서독이 「Bonn협정」, 「파리의정서」를 통해 서방 3국으로부터 베를린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통일문제, 강화조약체결권 등은 여전히 서방 3국에 유보되어 있었으며, 동시에 소련은 동독에 대한 점령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 ① 베를린과 독일전체에 대한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의 해제문제
- ② 통일독일과 폴란드간의 국경선 조정문제
- ③ 통일독일과 NATO와의 관계설정
- ④ 독일주둔 외국군철수 및 이에 따른 비용부담문제
- ⑤ 기타 통일독일의 군사력, 동독의 대외관계처리 등이 있었다.

이러한 통일에 따른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2월 1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F) 외무장관회담 별도회의에서 미·영·불·소 및 동·서독 6개국 외무장관은 2+4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6개국은 2차례의 예비회담에서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선문제, 유럽의 안보체제를 포함한 정치·군사문제, 베를린문제, 전승 4대국의 권한과 책임의 해체에 관한 문제 등 4개의제를 2+4회담에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6개국 외무장관들은 1990년 5월 5일 Bonn에서의 1차회담을 시발로 하여 동베를린에서의 2차회담, 파리에에서의 3차회담을 거쳐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4차회담을 갖고 「독일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2+4조약)」에 서명했다.

「2+4조약」은 전문과 10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문에서 당사국은 UN헌장에 따라 제민족의 동등한 자결권을 존

중하고, 통독과정에서 이루어진 국경문제의 최종타결이 유럽 평화·안정에 기여함을 인정하며, 독일통일과 동시에 전승 4대국의 독일에 대한 권리·의무는 상실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 조약은 제1조에서 통일독일의 국경을 동·서독의 국경으로 하고, 제2조에서 독일의 무력불사용을 선언하고, 제3조에서 독일의 군사력을 제한하고, 제4조에서 소련군 철수문제, 제5조에서 동독지역의 군사력배치문제 등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독일의 동맹가입권리를 보장하고, 제7조에서 전승 4대국의 권리와 책임을 종료시키는 규정을 두었다.

「2+4조약」의 체결로 독일통일을 위한 외적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던 독일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됨과 동시에 독일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통일조약」과 「2+4조약」을 통하여 독일은 2차대전후 줄곧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독일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유럽과 세계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3. 통일후 내부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제정

통일조약은 부속문서의 경과규정을 통하여 서독법의 확대 적용과 동독법의 효력지속에 따른 문제점을 대부분 해결하였다.

그러나 각 분야별 제도의 통합, 신연방주의 재건, 구동독불법문제의 청산 등 통일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제정작업이 계속되어야만 했다.

제11대 연방의회('87.2.-'90.12)가 국가조약, 통일조약, 2+4조

약 등 통일을 위한 법제도의 기초를 다진데 비하여 제12대 연방의회('90.12-'94.11)는 내부통합을 위한 법률제도정비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이제 제13대 연방의회('94.11-)가 남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입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제11, 12, 13대 연방의회 입법활동 실적

	제11대	제12대	제13대*
○ 상정된 법률안	595건	774건	189건
- 연방정부 발의	321건	402건	58건
- 연방의회 발의	227건	294건	75건
- 연방상위 발의	47건	78건	56건
○ 통과된 법률안	369건	463건	37건

* '95. 9. 13 현재

그뿐만아니라 각 연방행정부처는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을 통하여 통합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신연방주의 각 주들 역시 주법과 시행령의 제정·개정을 통해 통일후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다.

4. 본 책자의 구성

본 책자는 제2장에서 국가조약의 본문, 화폐통합과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부속문서 I)을 조문중심으로 요약하고, 화폐통합, 경제통합, 사회통합, 국가예산 및 재정 등 분야별로 동독이 시행해야 할 서독법률(부속문서 II), 동독이 폐지 또는

변경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III), 동독이 신규 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IV),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V),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법규정(부속문서 VI)을 법률명칭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 통일조약의 본문을 조문중심으로 요약하고, 연방법 중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폐기된 법률,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을 각 부처소관별로 법률명칭중심으로 정리하고(부속문서 I) 동독법 중 각 부처별로 동독지역에 계속 유효한 법률, 폐기한 법률,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을 법률명칭중심으로 정리하였다(부속문서 II).

제4장에서는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각 부처별로 내부통합과 관련하여 제정·개정된 법률을 요약정리하였다. 통일조약 발효이후 제정·개정된 500여개의 법률은 모두 내부통합과 관련이 있지만, 본 책자에서는 그 중 특별히 동독지역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법률 200여개를 선정, 연방부처별, 날짜별로 정리하였다. 독일연방 각 부처의 소관업무는 우리와 다르지만 본 책자에서는 독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였으며 연방청소년·여성·보건부처럼 소관업무가 비슷한 부처는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동독지역과 관련된 조문중심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어떤 법률은 비교적 상세히 요약되어 있고 어떤 법률은 간단히 요약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의 조문표기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서 법조문 표시는 독일표기(Art. Par. § 등)를 그대로 사용했다.

끝으로 부록에는 독일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큰 기동인 「동서독기본조약」, 「국가조약」, 「통일조약」, 「2+4조약」 본문(本文)이 참고자료로 실려 있다.

제 2 장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국가조약)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aatsvertrag)

1. 조약 본문
2. 화폐통합과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부속문서 I)
3. 동독이 시행해야 할 서독법률(부속문서 II)
4. 동독이 폐지 또는 변경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III)
5. 동독이 새로 제정할 법률(부속문서 IV)
6.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V)
7.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VI)

1. 조약 본문

제1장 총 칙

- 서독마르크 통용, 사회적 시장경제와 이에 상응하는 노동법질서 통합(\$1)
- 자유, 민주, 연방, 법치국가 및 사회적 기본질서의 수용원칙(\$2)
- 서독법령의 동독지역 확대적용(\$3)
- 동·서독지역의 법률개폐(\$4)
- 관청간의 공조노력(\$5)
- 재판을 통한 권리보호(\$6)
- 조약해석 및 적용관련 중재법원 설치(\$7)
- 공동정부위원회(\$8)
- 조약개정(\$9)

제2장 화폐통합에 관한 규정(\$10)

- 서독마르크의 통용(\$10.1)
- 화폐가치의 안정(\$10.2)
- 독일연방은행의 책임(\$10.3)
- 동독지역에 시장경제 금융신용제도 정착(\$10.4)
- 화폐교환비율(\$10.5)
 - 임금, 급여, 장학금, 연금, 집세, 지대 및 기타 정기적 지불금은 1:1
 - 동독마르크로 표시된 다른 모든 채권과 채무는 1:2

- 교환으로 인해 손해를 본 예금자들에게 구 국유재산지분증권 부여 (§10.6)
- 서독연방은행의 배틀린 임시사무소 및 동독내 지점 설치 (§10.7)

제3장 경제통합에 관한 규정

- 경제정책의 기본원칙 (§11)
- 내독교역 관계 개편 (§12)
 - 1951년 9월 20일 체결한 「배틀린협정」 조정
 - 「배틀린협정」의 결제방식종료, 청산계정 잔고 결산
- 대외경제관련 협정 이행 및 조정 (§13)
- 기업의 구조조정 (§14)
- 농업 및 식량경제 (§15)
- 환경보호 (§16)

제4장 사회통합에 관한 규정

- 노동법 질서상의 기본원칙 (§17)
- 사회보험원칙 (§18)
 - 동독에 연금·의료·산재·실업보험 등 세분화된 보험체계 도입
- 실업보험과 고용촉진 (§19)
- 연금보험 (§20)
- 의료보험 (§21)
- 보건위생 (§22)

- 산재보험연금(§23)
- 사회부조(§24)
- 재정지원(§25)

제5장 국가예산과 재정에 관한 규정

- 국가예산
 - 동독재정정책의 기본원칙(§26)
 - 동독의 기채와 부채(§27)
 - 서독의 재정보전(§28)
 - 집행상 과도규정(§29)
- 재정
 - 관세와 특별소비세(§30)
 - 취득세와 유통세(§31)
 - 정보교환(§32)
 - 과세관련 협의절차(§33)
 - 조세기관 설립(§34)

제6장 종결규정

- 국제법상조약(§35)
- 본 조약규정의 재검토(§36)
- 베를린조항(§37)
- 발효(§38)

2. 화폐통합과 화폐교환에 관한 규정(부속문서 I)

- 동독지역의 서독마르크 도입에 관한 규정
 - 서독마르크의 도입(§1)
 - 계산단위명칭변경(§2)
 - 서독마르크 이외 통화로 된 채무규정(§3)
 - 지불기한유예(§4)
- 동독지역에서의 화폐교환
 - 화폐교환일 및 금융기관계좌를 통한 교환(§5)
 - 금융기관에서의 화폐자산교환비율(§6)
 - 동독마르크표시 채무와 채권의 서독마르크 전환 : DM 개시대차대조표(§7)
 - 금융기관 및 무역상사에 관한 특별규정(§8)
 - 조사와 지급 중지(§9)
 - 시행규칙제정권의 위임(§10)
 - 종결규정(§11)
- 동독지역에서의 연방은행의 책임과 권한
 - 연방은행의 업무(§12)
 - 연방은행과 동독정부의 상호협조(§13)
 - 연방은행 임직원의 동독과건 및 근무관련규정(§14)

3. 동독이 시행해야 할 서독법률(부속문서 II)

(1) 화폐통합 관련

- 연방은행법
- 신용업법
- 저당은행법
- 공공법상의 신용업무기관의 저당증권법과 채무증서법
- 주택저축은행에 관한 법
- 자본투자회사에 관한 법
- 유가증권보호예수법
- 보험감독법

(2) 경제통합 관련

- 경쟁제한법
- 원자력법
- 상법(제1편-제3편), 민법(§705-§740)
- 유한회사에 관한 법
- 주식법
- 구매 및 공동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 유한책임회사의 증자와 합병에 관한 법
- 회사조직변경법
- 보통거래약관법
- 방문판매 및 이와 유사한 판매의 허가취소에 관한

법

- 할부판매관계법

(3) 사회통합 관련

- 광업 또는 철강산업의 감독위원회와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
- 광업 또는 철강산업의 감독위원회와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공동결정에 관한 법의 세부사항과 이에 관련되는 법
- 공동결정법
- 영업기본법
- 임금계약법
- 해고방지법

4. 동독이 폐지 또는 변경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III)

(1) 화폐통합 관련

- 동독국가은행에 관한 법
- 외환관리법, 제5차 형법개정법의 부속문서 5항
- 구화폐자산-변제채권과 관련하여 제정된 명령과 그 시행령
- 자금대출·이지지급부 저축, 현금 또는 무현금거래 및 수수료 산정과 관련하여 본 조약에 배치되는 법과 법령

(2) 경제통합 관련

- 대외무역법과 그에 준해 제정된 명령
- 외국인 참여하에 설립되었거나 영업활동을 규정한 명령
- 국유농업용지의 농업생산협동조합으로서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법령
- 농업생산협동조합법
- 콤비나트, 기업, 시설물 및 자본회사로의 전환과 관련된 법령
- 청산과 관련된 명령
- 에너지 경제에 관한 명령(에너지 명령)
- 동독민법
- 어음법
- 수표법
- 국제경제계약법
- 사회주의 경제계약체계에 관한 법
- 토지 및 토지권리의 국가문서에 관한 명령
- 토지거래에 관한 명령(토지거래령)
- 민간기업의 설립과 활동 및 기업자본참여에 관한 법
- 토지사용수수료에 관한 명령
- 계산처리 및 통계에 관한 명령
- 선박의 국기계양, 선박소유권 및 선박등록에 관한 명령(선박등록령)
- 동독형법

- 출소자 사회재적응 관련법
- 소송관련법(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사회법 등)

(3) 사회통합 관련

- 동독노동조합 권리에 관한 법
-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청 및 기업의 임무,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명령
- 직업알선기간 동안 주민에 지급하는 국가지원과 기업의 보상에 관한 명령
- 분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동독 국가평의회 의결 (분쟁위원회 규칙)
- 사회보험 항소위원회의 선거, 임무 그리고 업무처리에 관한 동독국무회의의 의결과 독일자유노동조합의 지침
- 국가사회보험을 위한 항소위원회 선거, 임무 그리고 업무처리에 관한 명령(항소위원회 규칙)
- 노동법
- 연금지급보장 및 계산과 관련된 명령
- 임의추가연금보호령
- 단순노동자 및 사무직 종사자의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명령
- 국가사회보험에 관한 명령
- 개업중인 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및 자유직업활동에 종사하는 예술가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명령
- 사회부조급여 관련 명령(사회부조령)

5. 동독이 새로 제정할 법률(부속문서 IV)

(1) 경제통합 관련

- 동독지역에 거주지나 본점 또는 영업점을 가지지 않은 자의 영업활동 개시 또는 자유직업활동에 관한 법
- 서독정부의 동의를 얻어 대외무역상사의 상품, 용역, 자본 그리고 이전거래의 자유화에 관한 법과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
- 가격형성과 가격감시에 관한 법
- 통신법률총괄법 유효범위내의 통신관청 사이의 정보자료증계에 관한 세칙, 통신관청과 여러 주 사이의 정기증계에 관한 명령
- 서독의 세무상담법과 회계감사법에 상응한 법규정

(2) 사회통합 관련

- 고용촉진법
- 지체부자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적응을 보장하기 위한 법(지체부자유인법)
- 질병시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법
- 사회보험에 관한 법
- 서독의 순연금수준에 기초한 기본연금 균등화에 관한 법과 기타 연금법규
- 노동법과 관련된 중재소의 설치와 절차에 관한 법
- 사회부조 청구에 관한 법(사회부조법)

(3) 국가예산 및 재정

- 국가예산법, 재정감독규정
- 특별소비세법
- 증류주독점법
- 소유 및 거래세법
- 소득세, 근로소득세 및 법인세 규정
- 관세법
- 상용차의 도로사용료 징수규정

(4) 자료보안관련

- 서독에 상용하는 자료보안 규칙

6. 서독이 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V)

- 연방은행법
- 특별산용기관에 관한 규정
 - 저당은행업과 이에 준해 제정된 법령
 - 공공법상 신용업무기관의 저당증권법과 채무증서에 관한 법
 - 주택저축은행에 관한 법
- 금융업에 관한 법
- 자본투자회사에 관한 법
- 보험감독법
- 사회보험부분의 후속규칙

- 상법전 도입에 관한 법
- 동독번호사 및 변리사의 서독지역에서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될 규칙

7. 동독이 향후 제정해야 할 법률(부속문서 VI)

(1) 환경법 관련

- 연방 공해물질배출 방지법 및 시행규칙
- 오물법 및 시행규칙
- 유연석유법 및 시행규칙
- 화학물질법 및 시행규칙
- 수자원관리법 및 시행규칙

(2) 경제 및 사회통합 관련

- 화물운송법
- 여객운송법
- 지불불능에 관한 법
- 직업교육법
- 임원대표자 위원회에 관한 법

제3장 :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독일 통일의 완성에 관한 조약 (통일조약)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 Einigungsvertrag -

1. 조약 본문

2. 연방법적용에 관한 특별경과규정(부속문서 I)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농림부, 노동사회부, 국방부, 청소년·여성·보건부, 교통부, 환경부, 체신부, 건설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소관업무별로 동독지역에 적용하지 않는 법률, 개정·폐기한 법률,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을 확정

3. 동독법 중 계속 유효한 법률(부속문서 II)

상기 14개 부처가 각 소관별로 동독지역에 계속 유효한 법률, 폐기한 법률,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을 확정

1. 조약 본문

전 문

제1장 : 편입의 효력

-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5개주로 된 동독이 서독으로 가입 (§1.1)
- 서 Berlin과 동 Berlin을 Berlin주로 통합 (§1.2)
- 수도문제에 관한 규정 (§2.1)
- 10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독일통일절로 결정 (§2.2)

제2장 : 기본법

- 기본법의 구동독지역 발효 (§3)
- 독일통일 달성에 따르는 기본법 전문의 개정 (§4.1)
- 기본법 제23조의 폐기 (§4.2)
- 연방참여위원의 의결권 재분배와 관계되는 기본법 제51조 제2항 개정 (§4.3)
- 동독의 채무와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를 위한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한 기본법 제135a조 제2항 신설 (§4.4)
- '92년 12월 31일 또는 '95년 12월 31일까지 구동독 지역에 대한 헌법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본법 제143조의 신설 (§4.5)
- 독일국민전체를 위한 헌법과 관계되는 기본법 제146조의 개정 (§4.6)
- 독일통일과 관련되어 대두된 헌법문제를 2년 이내

에 해결한다는 권고(§5)

- 기본법 제131조의 신연방주 적용 배제(§6)
- 구동독지역을 기본법의 국가재정현장에 포함(§7.1)
- 각 주간 잠정적 매상세 분배에 관한 규정 및 독일 통일기금의 재원 사용(§7.2-6)

제3장 : 법의 동화

- 동독지역에 연방법 적용(§8)
- 계속 적용되는 동독법(§9)
- 동독지역에 유럽공동체법 적용(§10)

제4장 : 국제조약 및 협정

- 동독지역에 서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적용(§11)
- 동독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처리(§12)

제5장 : 공공행정과 사법

- 시설의 이양(§13)
- 주의 공동기관(§14)
- 주행정을 위한 공동규정(§15)
- 통합 Berlin 주정부 구성에 관한 경과규정(§16)
- SED 불법정권 희생자의 복권(§17)
- 법원판결과 공공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의 효력 지속 (§18, §19)
- 공무원의 법적신분에 관한 규정(§20)

제6장 : 공공재산과 채무

- 동독의 행정 및 재정재산을 연방, 주, 지자체로 분할(§21, §22)
 - 동독국가예산의 채무를 연방재무부 소관 연방 특별재산으로 한다는 과도기 조치(§23, §24)
- 인민공유재산의 사유화 임무를 부여받은 신탁청을 법적 행위능력이 있는 연방정부 직속관청으로 개편 (§25)
- 구동독의 독일제국철도와 독일체신의 특별재산을 연방으로 이양(§26, §27)
- 지역경제 촉진장치를 구동독지역으로 확대 적용 (§28)
 - 동독의 기존 대외경제관계 계속 유지(§29)

제7장 : 노동, 사회보장, 가족, 여성, 보건, 환경보호

- 노동법과 사회법의 평준화 계속 시도(§30)
- 임신중절에 관한 과도기 규정(§31.4)
- 동독의 어린이 부양비용을 연방정부가 '91년 6월 30일까지 분담(§31.3)
- 자율사회단체 후원(§32)
- 동독 의약품의 생산자가격 인하(§33.2)
- 환경정비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34)

제8장 : 문화, 교육, 학술, 체육

- 문화·예술의 진흥(§35)

- 방송체제 통합(§36)
- 교육제도 통합(§37)
- 학술과 연구기관 통합(§38)
- 체육제도 통합(§39)

제9장 : 경과 및 최종규정

- 제1차 국가조약을 비롯한 과거 동·서독간 제반조약의 처리(§40)
- '90년 6월 15일자 공동선언을 근거로 하는 미해결재산문제 처리규정(§41)
- 동독인민회의의원 144명을 전독의회 구성시까지 제 11대 연방회의의원으로 파견(§42)
- 주정부 구성시까지 연방상원위원회 구성관련 임시 규정(§43)
- 법률보전(§44)
- 조약발효(§45)

2. 통일조약 제8조와 제11조에 따른 연방법 적용에 관한 특별경과규정(부속문서 I)

Besondere Bestimmungen zur Überleitung von Bundesrecht gemäß Artikel 8 und Artikel 11 des Vertrages(Anlage I)

가. 연방외무부 소관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서독과 서방3개국사이 관계조약, 전쟁과 점령문제관련조약, '55. 3. 24에 제정된 조약법, 독일-프랑스간 정부협정, NATO군의 지위관련조약, NATO군의 지위에 대한 추가협정, NATO군 본부의 법적지위 관련조약, 국제군사령부 설치와 운영관련조약, '87. 12. 11 주둔국국가들 협정, 소련과 서독간의 중·단거리미사일 철수관련 사찰각서

나. 연방내무부 소관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기본법 §131 해당인사의 법률관계규정, 국가사회주의 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손해배상 법률규정, 외국인에 대한 법률
- 망명자지원법, 보증보호법, '65. 12. 1 공포된 통화규정
- 동독 및 동베를린과의 통상교역 통계법

(2) 개폐되는 법률

- 연방선거법, 명예훈장·칭호 수여에 관한 법률, 독일 통일절에 대한 법률
- 연방문서관리법, 독일도서관법, 독일문화재 유출방지법
- 무기관련법
- 연방난민법, 구속자지원법, 가중처벌면제법, 전쟁포로배상법, 망명절차법
- 연방공무원법, 공무원후생복지법, 연방보수법
- 통계관련시행규정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할 법률

- 정당법
- 행정소송법, 호적법, 외국인법, 외국인법을 위한 수수료 규정, 망명청구법, 여권법, 형사재판법, 주민등록법, 방송국시설법
- 폭발물에 관한 법률, 연방범죄수사국설치법, 정보보호법, 계출기본법
- 연방난민법, 구속자지원법, 가중처벌면제법, 전쟁포로손해배상법
- 공무원기본법, 연방공무원법, 근로시간규정, 모성보호법, 요양휴가규정, 교육휴가규정, 연방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복지법, 연방징계규정, 연방보수법, 연방공무출장비용법, 연방이사비용법, 직업상 부부별거수당규정, 연방인사대표법, 연방인사대표법을 위한 선거규정, 군인보수법과 시행규칙

다. 연방법무부 소관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사법분야
 - 화의법, 파산법, 파산법시행령, 파산법개정법률시행법, 석탄과 철강생산할당액 우선권산출관련법, 연방변호사법, 연방공증인법
- 민법분야
 - 법원의 계약구조에 관한 법률, 통상의 부양에 관한 규정
- 형법과 질서위반법 분야
 - 제5차 형법개정법률, 내독간 형사사법 공조법시행규정

(2) 개폐되는 법률

- 사법분야
 - 민사소송법, 동독지역 변호사의 지위와 권한 동등화
- 민법분야(민법시행법 제VI부 신설)
 - 민법총칙
 - 행위무능력 등의 선고, 사단(社團), 재단, 법인의 책임, 물건, 소멸시효 등
 - 채권법
 - 임대차, 용익임대차, 경작지의 사용수익, 고용관계, 역급부계약, 당좌계약과 저축계

약, 소비대차계약, 지분공동체, 불법행위 등

- 물권법

- 점유, 소유권, 제한물권의 내용 및 순위, 용익물권 및 건물소유권에 대한 특별규정, 공동사용수익권, 저당권 등

- 가족법

- 약혼, 일반적인 혼인의 효력, 부부재산권, 이혼한 배우자의 부양, 연금 등의 지급, 혈통,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연금의 조정,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일상의 경비, 부모와 자 사이의 일반적인 법률관계, 부모의 보호임무, 혼인외의 자의 적격 취득, 입양, 후견, 보호제도 등

- 상속법

- 상속관계, 사인처분

- 국제사법

- 완결된 사건, 친족법상효력, 부부재산제 등

o 형법과 질서위반법 분야

- 형법시행법률

- 보안감호, 국제형법규정의 적용, 동독에서 행하여진 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 형벌의 조정 등

- 연방중앙기록부법

- 동독김철총장이 관장하고 있던 형벌기록부의 인수관련규정

- 행정법
 - 동독의 소년구금 및 자유형
- 형사소추처분의 보상에 관한 법률
 - 동독에서의 자유 박탈적 또는 그의 일시적인 형사소추처분의 확정판결 결과에 대한 보상
- 내독간 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법률 폐기
- 상사법, 회사법, 보험계약법 분야
 - 생명 및 정기보험청구권의 규율에 관한 법률
- 공업소유권, 부당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분야
 - 공업소유권법 특별규정 제정
 - 특별관청 및 근무공무원(특히, 실용신안, 상표 등) 처리관련사항 등
 - 저작권법 특별규정 제정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사법분야
 - 법원조직법
 - 재판권제도의 구조, 의장단의 구성과 업무분장, 법원의 관할과 구성, 행정·재정·노동·사회재판권에 관한 특별규정, 계류중인 사건이관에 관한 규정
 - 법원의장단 선거법, 사법보조관법, 민사소송법, 행정법원규정, 재정법원규정, 독일법관법(법관임명에 대한 경과규정), 법률상담법, 상담원조법, 변호사법, 자유박탈에 있어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에 관한 법, 사법징수법, 파산법개정법률 시행법 §4, 독일-오스트리아 파산조약시행법, 법원비용법 및 관련규정, 집달리비용에 관한 법, 명예판사보상에 관한 법, 증인과 감정인의 보상에 관한 법, 연방변호사 수수료법

○ 민법분야

- 토지등기법, 토지등기법시행규정, 토지등기제도 영역에서의 처분에 관한 법률, 토지등기부설치 및 작성에 관한 일반예규, 주거소유권의 등기조치에 관한 예규, 선박등기법, 선박등기법시행규정, 제조물책임법, 실종법, 등기된 선박 및 건조 중의 선박에 대한 권리관련 법률, 혼인법, 연금 등의 지급조정에 관한 법률, 책임법

○ 형법과 질서위반법 분야

- 형법, 형법시행법, 소년원법, 질서위반법, 행형법, 형사소추처분의 보상에 관한 법률

○ 상사법, 회사법, 보험계약법 분야

- 상법, 상법시행법, 해상법상 배당규정, 내수항행법, 주식법시행법,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과 기타 상사에 관한 개정법률, 의무보험법

○ 공업소유권보호, 부당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분야

- 부당경쟁방지법

○ 헌법재판제도분야

- 연방헌법재판소법

라. 연방재무부 소관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군사동맹청산법, 유가증권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
정비종결법, 유가증권청산법, 외국유가증권정비법,
외국증권보상법, 구저축자법, 전후처리법, 나찌자산
시설과 법적지위관련법, 권리자청산법, 복구손상법
과 시행규정, 독일제국은행과 할인은행해산법, 화폐
개혁종료법, 점령에 따른 피해보상법, 가치평가조정
법
- 제2차 이관법, 제3차 이관법

(2) 개폐되는 법률

- 구저축자법, 일반전쟁결과 처리관련법, 정비보상법
- 독일통일기금설립법, 연방과 주간의 재정배분법, 기
초자치단체의 재정개혁법, 조세분할관련법, 재무행
정법, 공과금시행령, 세무사법, 관세법, 브랜드독과
점법, 브랜드관련 연방독점 행정관청설치법, 농업용
가스 및 유류사용법
- 세금관련규정
 - 매상세, 소유세, 유통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
세, 토지세 등
- 소득세법, 주택건설장려법, 법인세법, 영업세법, 영
업세법시행령, 동독지역특수투자법, 관세법, 매상세
법 및 시행규칙
- 사정법(査定法)

- 농업과 임업자산, 배상경제가치, 토지자산, 전후건축물, 주택소유와 부분소유, 경영자산과 자원채취권 등 자산평가규정
 - 재산세법, 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상속세 시행규칙, 토지세법, 토지취득세법, 재산거래조세법, 보험세법, 화제방지세법, 자동차세법 및 시행규칙, 세무공무원교육법, 세무공무원 교육과 시험관련규정, 예산기본법, 국가조약 부록 I의 §5
 - 동독상주대표부와 대표부종사자에 대한 매상세부과 규정삭제
 - 동독의 국영보험 해체관련법률 제정
 - 동 기관의 업무, 조직, 감독 등 규정
 - 베를린국립은행 이관에 관한 법 제정
 - 채무청산기금법 제정
 - 기금의 목적, 임무, 채무분배 등 규정
 - '93년말로 폐기
-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국가조약관련 화폐공동체를 설립하기 위한 법규와 동독에 대한 독일연방은행의 관할권과 자격은 통일조약 발효후 12개월안에 독일연방은행법에 따름
 - 제1차이관법, 맥주세법, 철도와 전차회사의 연금구조와 관련규정

마. 연방경제부 소관

-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서베를린 철소비경제 정가보상규정
 - 구독일제국소유의 필름자산청산에 관한 법
 - 전기공급법, 고체연료세관통과량에 관한 법

- (2) 개폐되는 법률
 -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임무에 관한 법, 전쟁 무기의 규제에 관한 법
 - 공인회계사법
 - 영화진흥법
 - 갈탄생산협회설립법 폐기, 석유통계관련법, 소금채취관련법
 - 대외경제법, 대외경제규정

-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할 법률
 - 지역경제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임무에 관한 규정, 기술건축업무에 관한 규정, 기술자 및 건축가 사례비 규정, 자동차 의무보험금 규정
 - 수공업규정, 공인회계사법, 굴뚝청소부법, 상공회의소법 임시시행규칙
 - 오락규정, 주류 및 음료판매기구규정, 도량검정법, 완제품포장규정, 영화진흥법
 - 연방광산법 및 관련규정, 광산전문위원회규정, 열관리규정, 난방시설령, 난방비계산령, 에너지관리법,

- 전기요금규정, 가스요금규정, 전기공급, 가스공급, 물공급, 난방공급 관련규정, 석유저장법
- 섬유표시법, 크리스탈유리표시법,
- 개발도상국지원법 (연방경제협력부소관)

바. 연방농림부 소관

-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전국식량동맹청산법, 소규모농업지원법, 농업촉진규정
 - 우유탁송배상법
 - 사회보장분담금경감법, 농림업분야 피고용자를 위한 별도복지기금 설치법
- (2) 개폐되는 법률
 - 동물전염병보호규정
 -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 향상 공동임무에 관한 법
 - 시장구조법 및 시행규정, 우유, 치즈, 버터관련규정, 돈육의 법적유통 등급관련규정
 - 연방사냥법, 삼림총자생산지규정, 연해어업규정
-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비료법 및 시행규정, 미료시험 사용과 분석시행규정, 곡물유통법, 품종보존법, 식물보호법, 동물전염병법, 돼지흑사병규정, 동물예방접종법, 동물사체소거규정, 동물보호법(개, 돼지 등)

- 제국이주법
- 연방사냥법, 삼림종자 및 모종에 관한 법, 벌채제한 규정

사. 연방노동사회부 소관

-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공무원 해고고지 기간에 관한 법률
 - 귀향법, 귀향보조조치법시행령
 - 나찌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법, 현물급여령
 - 공화국보험령, 계약공무원보험법, 공화국광부조합법, 국가조약 §23, §24 등 47개 법규정
 - 법정사고보험에 있어서 급부금 지급관련 임시법규, 사회보험 적용규정 및 동 시행령
 - 제5차 적용법, 노동축진법과 연방원호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예산구조개선을 위한 법, '90/'91결산령
- (2) 개폐되는 법률
 - 선원법
 - 아세틸렌법, 엘리베이터규정령, 가연성 액체에 대한 규정, 기관(汽罐)규정, 인쇄저장용기규정, 고압가스 관규정, 폭발물위험구역의 전기설비규정, 설비안전법, 의료기구관련규정
 - 사회법원법

- 고용촉진법, 근로자위탁법, 부정노동방지법, 고령자 시간제노동법, 귀향법, 중증장애자법, 실업자지원규정, 노동허가규정
- 사회보험회사청산을 위한 특별규정제정
- 사회보험신청절차규정 제정
 - 기본원칙, 신청양식, 특별사항, 해지신청, 신고 제출 등
- 사회법 제5권 (법정의료보험) XII장 신설
 - 보험가입과 인적사항, 급부, 의료보험조합과 급부이행자의 관계, 의료보험조합의 조직, 자금공급, 벌금규정 등
- 병원투자법 개정
 - 개별촉진, 총괄촉진, 임시병원설립자명단, 비권장 병원, 요양원과 재활원 등
- 연방간호정관규정, 제국보험령, 법정의료보험법의 확대발전을 위한 법
- 동독지역 보험실시를 위한 특별규정, 보험번호의 통일과 위임에 관한 규정, 농업경영자 노령보조금 신규법, 연방원호법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민법, 상법, 영업법, 임금계속지급법, 연방휴가법, 해고보호법, 선원법, 가내노동법 및 시행령, 광산업 공동결정법, 경영기본법, 대표자위원회법, 노동협약법, 노동법원법, 기업양로제도 개선법
- 영업규정, 아세틸렌시행령, 엘리베이터규정, 가연성 액체관련규정, 기관령규정, 인쇄보관규정, 고압가스

- 공급규정, 폭발위험구역의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 작업장규정, 자유시간 특별노동보호 요구규정, 노동 안전을 위한 기업내 의사, 안전기술자 및 기타 전문요원 관련법, 방사선규정, 위험물질규정
- 철강산업 및 제지산업에 있어서 일요일과 공휴일 작업금지의 예외규정, 약국과 점포의 일요일 휴무 규정, 노동시간 규정 및 시행령, 청소년 노동시간 및 어린이노동관련법 시행령, 병원근무시간규정, 제과점과 빵집근무 시간규정 및 시행령, 여가규정,
 - 사회법총칙, 사회법중 행정소송규정, 공중업무관할청규정, 사회재판소법, 중증장애자법과 작업장령, 공준(公準)규정, 월동수당규정, 동절기건축보험령, 보석금령, 연방노동부 행정위원회규칙
 - 사회법 중 사회보험을 위한 공동규정, 사회보험산정규정, 사회보험상 예산제도규정, 분담금 감독규정, 예술인 사회보험법 및 시행규칙, 예술인 사회기금 규약관련규정, 노동보상규정, 정보전달규정 및 정보 종합규정
 - 농업종사자 의료보험에 관한 2차개정법률, 보험조합 지정 의사허가령, 보험조합지정 치과의사허가령, 조산원수수료규정, 병원회계장부규정, 의사보수규정, 치과의사보수규정
 - 연금개정법, 독일연극장 요금규정, 독일예술오케스트라 요금규정, 후원조정과 보상규정, 사건후보험강제규정, 보험문서령, 연금보험 의무분담금관련규정
 - 공화국보험령, 사고보험신규정법, 사고상해자의 정형외과진료규정, 직업병령, 연간근로임금상한에 관한령, 법정사고보험 급부협정시 자본가치의 산정에 관한 령, 법정사고보험의 금전급부보장에 관한 령

- 연방원호법 및 시행령, 전쟁희생자원호행정관청의 설립법, 연금자산법, 전쟁희생자원호관리절차법, 정형외과령, 상이군인신체운동령, 전쟁잔류자 복지사업령, 직업병보상령, 보상연금령, 전쟁희생자원호의 행정관할령, 외국원호령, 희생자보상법, 전쟁포로가족의 부양보조에 관한 법, 제9차 적용법, 재활보상법, 제15차 재산형성법, 제5차 재산형성법시행령

아. 연방국방부 소관

- (1) 개폐되는 법률
 - 군인후생법
 - 구 동독군인의 법률관계를 위한 특별규정
-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병역의무법, 위생장교 후보생의 교육비규정, 여성위생장교의 모자보호법, 여성위생장교의 교육휴가규정, 군인후생법, 생계보장법,

자. 연방청소년·여성·보건부 소관

-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공화국의사협회청산법
 - 생계비 선지급법, 출생전 모자보호재단설치법, 묘지

법상 묘지관리와 수리를 위한 총액명령

(2) 개폐되는 법률

- 비현역 군복무법
- 연방의사규정, 치과의료행위법, 의사면허규정, 조사원법, 환자간호법, 조산원과 조산보조원의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환자간호원을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응급구조 조수법, 산업 및 근로치료법, 산업치료 및 근로치료를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영양사보조원법, 영양사보조원 교육 및 시험규정, 마사지기술자 및 환자체조사와 건강육시술인의 교육법, 마사지사와 건강육기술인 및 환자체조사의 교육 및 시험규정, 환자체조사의 교육 및 시험규정, 안과의사보조 사시교정사법, 안과의사보조 사시교정사를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의료기술조수법, 의료기술조수를 위한 교육 및 시험규정, 마취제법, 연방약사규정, 약방법, 약사면허규정, 약국경영규정, 약품별 개정법률, 의약품 경고문구규정, 약제회사의 경영규정, 처방전규정, 방사선이나 위험광선으로 취급되는 약품에 대한 규정, 약품소매시 전문지식증명에 관한 규정, 수의약국령, 유전인자기술법
- 식료품통제관령
- 육류위생법, 조류육류규정
- 연방수의사령, 수의시승인령
- 연방자녀부양법, 연방교육비법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모자보호법

- 아동 및 청소년보호법, 임의 사회연도장려법
- 군복무거부법, 미현역 군복무법
- 마취제법, 마취제저방전령, 연방전염병법률, 식수령, 성병예방법
- 우유와 버터, 아이스크림, 면류, 코카인 함유 청량음료, 맥주 등 22개 식품관련 명령, 식료품 운송용기령
- 육류위생령
- 수의사의료수가령
- 연방자녀수당법, 연방교육비법, 연방사회보조금법, 정규수입령, 보조금분류령, 묘지법, 주거법, 주거최소건축령, 주거관리업무상 양로원, 노령자기숙사와 성인요양원의 관리령, 지체부자유아보호를 위한 재단설치법

차. 연방교통부 소관

-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화물수송 최대량 규정
- (2) 기폐되는 법률
 - 이·착륙시 항공기안전을 위한 시설과 복무요구 비용징수규정
 - 해난조사법, 해난조사법 시행규정, 일반해상안내규정, 해로규정 부록 I, 외국선박선원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 교통재원조달법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연방철도법, 독일연방철도의 재산관계에 관한 법, 철도건설목적법, 철도건설과 운영규정, 협궤철도건설 및 운영규정, 철도신호규정, 철도공동운영 봉사규정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허가규정, 자동차부속품규정, 차량등록규정, 자동차공인법, 운전교습자에 관한 법, 자동차학원강사법 시행규칙, 자동차학원강사 교육법, 자동차학원강사 시험규정, 운전교습생 교육규정, 도로교통법범칙금규정, 도로교통규정, 인력운송법, 도로인력운송 공동투자능력 보상규정, 화물자동차운송법
- 항공교통법, 항공운송허가규정, 항로사용료규정, 이착륙시 비행안전을 위한 복무와 시설요구비용 징수규정
- 항공법, 해난조사법, 해난조사법시행규칙, 해상안내법, 일반안내규정, 해상안내조사규정, 선박안전규칙, 해상항로규정, 선박검사규정, 스포츠 보트면허규정, 항해일지규정, 유류책임허가규정, 선원규정, 간부후보생교육법, 선박기술자교육법, 선박운영반장규정, 상선환자보호에 관한 규정, 해상복무능력규정, 선원규정, 국외선박운영서류송달에 관한 규정
- 내륙수로선 검사규정, 내륙수로운항선박 설비규정, 선박항해일지법, 내륙수로 선원특허규정, 내륙수로 규정시행령, 스포츠 보트운전면허규정, 연방수로법
- 연방 원거리도로법
- 위험물운반법, 위험물위임령, 도로위험물규정, 철도

위험물규정, 내륙수로선박위험물규정, 해상위험물규정, 위험물질운송에 관한 운임규정, 진차건설 및 운항규정

카. 연방환경부 소관

(1) 개폐되는 법률

- 연방환경보호법
- 원자력법, 방사선 보호규정, 방사선 보호법
- 쓰레기처리법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소규모난로에 관한 규정, 난방용 경유와 디젤의 황산등에 관한 규정, 방해규정, 대형난로에 관한 규정, 주방위시설에 관한 규정, 휘발유납성분법
- 하수도요금법, 세척제에 관한 법, 압력규정, 인산염 한계량에 관한 규정
- 화학물질에 관한 법, PCB, PCT, VC 금지규정, 페놀금지규정
- 연방자연보호법

타. 연방채신부 소관

(1) 동등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우편규정, 우편요금규정, 우편신문규정 등 14개 규정
- (2) 개폐되는 법률
- 우편기본법
-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우편기본법
 - 우편분야에 관한 법
 - 전신전화시설에 관한 법, 텔레코뮤니케이션규정, 국제텔레코뮤니케이션규정

파. 연방건설부 소관

- (1) 동독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
- 건축조치법, 베를린의 주택문제 개선법
- (2) 개폐되는 법률
- 건축법, 건축이용법, 도시계획법, 소규모정원법, 제2차 주택건설법, 주택관련법, 임대료인상규정, 주거보조비법
-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주거보조금관련규정

하. 연방교육부 소관

(1) 개폐되는 법률

- 대학건축촉진법, 대학기본법
- 연방교육촉진법, 장학금지급규정
- 직업교육법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직업교육법, 통신교육법

3. 동독법 중 계속 유효한 법률을 위한 특별규정 (부속문서 II)

Besondere Bestimmungen für fortgeltendes Rech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nlage II)

가. 연방외무부 소관

- (1) 계속 유효한 법률
 - 미·소간 중단거리 로켓트철거관련 조약

나. 연방내무부 소관

- (1) 계속 유효한 법률
 - 주 선거법 ('90. 6. 22 제정)
- (2) 개폐되는 법률
 - 주 시행규칙 ('90. 6. 22 제정)
 - 동독의 지방 및 지역자치행정법 ('90. 5. 17 제정)
-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동독정당법 ('90. 2. 21 제정)

- 동독체류 외국인에 관한 법률, 동독의 외국인체류규정, 동독에서의 외국인 상주 또는 정기체류를 위한 체류보장법 시행령, 등록의무이행에 관한 '89. 12. 21 법령, 동독의 지도 및 측량을 위한 관청규정, 연방인사대표법적용에 관한 법률, 연방인사대표법적용에 관한 법의 선거령
- 신고제도규정, 경찰업무에 관한 법률

다. 연방법무부 소관

(1) 계속 유효한 법률

- 공증인의 실무활동에 관한 규정의 시행규칙, 공증인의 복무규칙에 관한 규정, 지역중재소에 관한 법률, 동독법조인 교육규정, 판사법에 대한 동독의회 의결, 판사법시행령(징계법), 판사법에 관한 1·2·3차 시행령, 판사시보령, 법원과 국립공증소의 통역과 번역사고용관련규정
- 나찌정부에 의한 피해자의 법적지위보장에 관한 법령, 재산법상 청구등록에 관한 규정 및 제2차 규정
- 특별투자에 관한 법률
 - 특별투자목적, 토지매매와 투자증명, 행정절차 등
- 공공자산문제의 규칙에 관한 법률
 - 재산가치반환, 국가행정의 폐지, 권리자와 제3자의 법률관계, 조직, 소송절차규정 등
- 동독의 형법일부조항, 제6차 형법개정법, 질서위반

행위규제관련 규정, 임신중절에 관한 법시행규칙

- DM 개시대차대조표와 자본의 새로운 확정법
 - 목록, 개시대차대조표, 부록
 - 기업연합의 개시대차대조표, 총개시대차대조표
 - 자본의 준비
 - 독일마르크 급부의 확정과 적용
 - 절차
 - 영업지점 관련규정
 - 형법규정과 질서위반규정, 과태료
 - 조세, 수수료
 - 기타규정
 - 종결규정

(2) 개폐되는 법률

- 종합강제집행규정
 - 제3자의 소유권 및 저당권, 지불청구우선 등
- 강제집행에 관한 제2차 규정(절차의 중단)
- 토지거래규정
- 동독형법 §191a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변호사법, 개업공증활동에 관한 규정
- 국가배상법
- 손해배상사건지급법

- 화물차운전자 의무보험 가입규정(1990. 8. 1 제정)

라. 연방재무부 소관

(1) 계속 유효한 법률

- 저축은행법 ('90. 6. 29 제정)
- 동독이외지역에 주소를 갖는 권리자의 배당권 상계에 관한 규정 ('90. 6. 29 제정)
- 동독의 마르크를 불법적으로 서독 마르크로 환전하는 행위에 관한 확정법 ('90. 6. 29 제정)
- 동독종교세법
 - 개신교와 카톨릭 교회의 종교세규정
 - 기타 세금징수의무가 있는 종교단체의 기본규정

(2) 개폐되는 법률

- 베를린국립은행법 ('90. 6. 29 제정)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90. 7. 1 - '90. 12. 31까지 동독예산법
- 지방자산법에 관한 1990. 7. 6 제정법
- 베를린 동업조합은행의 정관에 관한령('90. 3. 30 제정)
- 농업농장의 가스인료사용법 및 시행령
- 시민 자유 개인보험 영역의 법규정 폐지에 관한 령

(’90. 8. 22 제정) 등

마. 연방경제부 소관

- (1) 개폐되는 법률
 - 대외경제, 자본 및 지불거래에 관한 법 (§8, §50)
 - 바르샤바 동맹국간 무역관련 결의사항
-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정가영역법규의 존속과 폐지에 관한 령 (’90. 6. 25 제정), 약품정가령, 수공업의 생산을 동업조합 설립 운용, 변형에 관한 령, 수선 및 직접생계유지를 위한 직업범위의 공동설비에 관한 령, 동독의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촉진에 관한 령
 - 연방광산법 일부조항, 채광을 위한 지하굴에 관한 법 및 시행령, 에너지령과 시행령

바. 연방농림부 소관

- (1) 개폐되는 법률
 - 동독의 사회적·생태적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농업적응에 대한 법 (’90. 6. 21제정)
 - 동업자조합관련법
-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시장경제에 동독농업의 구조적·사회적 적응촉진을 위한 법('90. 7. 6 제정)
- 농업생산 동업조합관련법
- 산림육종요소의 관리와 승인 및 산림육종의 전문기술기준

사. 연방노동사회부 소관

(1) 계속 유효한 법률

- 고용촉진법 시행령('90. 6. 22 제정), 외국인의 노동관계 연장에 관한 규정 시행령, 단축노동수당지급을 위한 기간연장법('90. 8. 20 제정)

(2) 개폐되는 법률

- 동독근로법 §115b

(3)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동독노동법, 요양휴가에 관한 령, 노동권의 중재절차와 설비에 관한 법('90. 6. 29 제정), 기업정관법('90. 7. 11 제정)
- 법정공휴일의 채택에 관한 령, 중증장애자가족의 특별부양에 관한 령
- 노동촉진법규정('90. 6. 22 제정), 외국인의 노동관계 연장에 관한 령, 사회성 결여시민의 취업촉진령, 외국인의 조직퇴직관련 령, 명예퇴직수당의 보장에

관한 령

- 사회보험에 관한 법규정, 노동자와 계약사무직의 사회보험령, 자유업종사자 보험에 관한 령, 사회의무보험의 연금보장과 산정에 관한 1, 2차 시행령, 연금법규정('90. 6. 28 제정), 사회보험에 관한 법 시행령
- 사회보험법, 보험금담보규정, 사회보험의 추가연금보험관련 령, 철도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령, 동독철도의 공급령, 독일우편근무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령, 우편공급령, 국민기업의 노동자와 종업원을 위한 추가연금 공급 관련 령, 명예연금령, 발레단원의 직업상 보조금 관련 령, 임의 및 추가보험에 관한 법령, 특별공급체계와 보조공급체계규정, 사회·문화·스포츠 행사시 사고보험확대 관련 령, 사회의무보험령 제8차 시행령, 직업병의 예방, 신고 및 감정에 관한 령

아. 연방국방부 소관

(1)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군인복무법 §29, §30, 동독군인의 금료규정, 동독여군의 모자보건령

자. 연방청소년·여성·보건부 소관

(1) 계속 유효한 법률

- 청소년·스포츠 부령('90. 5. 29),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권리·의무관련령, 교육제도법 제4차 시행령, 학생영양급식과 아동급식관련령, 생계보장령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동독노동법, 사회보험관련법, 노동보험령, 노동자·종업원의 사회보험령, 여성의 권리와 모자보건에 관한 법
- 청소년보조금령 제6차 시행령
- 중앙마약단속반령, 마약단속법, 마약법, 인턴과정의 실습지침
- 노동자와 계약사무직의 사회보험령, 사회보조금청구에 관한 법 등

차. 연방교통부 소관

(1)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국가철도감독관련법, 연결접속철도의 건설과 경영관련령, 개척철도건설과 경영령, 근로보호령, 접속철도와 동독철도사이의 법률관계규정
- 화물차량교통 관련령, 영업용 인력수송교통 관련령, 도로교통령, 도로교통허가령, 차량교통을 위한 관청

승인검사령

- 국내 내수로운행규정령
- 공공도로관련령, 도로교통규정
- 위험물 안전수송보장관련령, 위험물항구적재와 해상 운송에 관한 령, 위험물 항공수송에 관한 령

카. 연방환경부 소관

- (1)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환경법('90. 6. 29 제정), 원자력·방사능 보호의 안전에 관한 규정, 하수처리보상에 관한 령

타. 연방체신부 소관

- (1) 계속 유효한 법률
 - 전보업무령
-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우편업무령, 인쇄물판매령, 우편환업무령, 우편대체 업무령, 우편저축업무령
 - 전화업무령, 텔렉스업무령, 전화국령, 라디오와 TV 방송의 청취자, 시청자의 설비생산촉진 변경령

파. 연방건설부 소관

- (1)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지역 및 동업조합 공동가옥의 할당권 보장법

하. 연방교육부 소관

- (1) 개폐되는 법률
 - 동독학술아카데미령 등 16개 법령 폐기
- (2) 별도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 교육보조금령, 장학금지급령 등

제4장 : 1990-1995년간 각 부처별 통합관련 개정·제정된 법률

1. 연방외무부 소관
2. 연방내무부 소관
3. 연방법무부 소관
4. 연방재무부 소관
5. 연방경제부 소관
6. 연방농림부 소관
7. 연방노동사회부 소관
8. 연방국방부 소관
9. 연방청소년·여성·보건부 소관
10. 연방교통부 소관
11. 연방환경부 소관
12. 연방건설부 소관
13. 연방교육·과학기술부 소관

1. 연방외무부 소관 (타부처 소관 국제협정 포함)

베를린 주둔 프랑스공화국,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대영제국, 아메리카합중국 병력의 한시적 체류와 관계되는 합의사항 및 독일통일 이후 통일조약 제3조에 명시된 지역의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병력의 한시적 체류와 관계되는 합의사항 발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Inkraftsetzung von Vereinbarungen betreffend den befristeten Aufenthalt von Streitkräften der Französischen Republik,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Großbritannien und Nordirland und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in Berlin und von sowjetischen Streitkräften auf dem Artikel 3 des Einigungsvertrages genannten Gebiet nach Herstellung der Deutschen Einheit

Gesetz vom 9. 9. 24 BGBl I, Nr.35, S.1246

- 통독 이후 소련군이 구동독지역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법적근거 마련
- 연합국 유보권이 폐기된 이후 프랑스, 영국, 미국 병력이 베를린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임시협정 체결
- 베를린에 대한 유보권 및 점령권의 폐기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 처리
- 점령군의 소유관계 및 이용관계의 종식
- 연합군 근무자의 인적사항 처리
- 연합국지역 주둔병력의 노동법적, 사회보험법적 관계 규정

공포 1990. 9. 28 발효 1990. 9. 29/ 1990. 10. 3

독일관련 최종치리에 관한 1990년 9월 12일자 조약에 대한 비준법률 (2 + 4 조약)

Gesetz zu dem Vertrag vom 12. September 1990 über die abschließende Regelung in bezug auf Deutschland

Gesetz vom 90. 10. 11 BGBl II, Nr.38, S.1317

BGBl II 1991, Nr.9, S.587

- '90. 9. 12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조약과 의정서 비당록의 비준
 - 연합국의 권한과 책임 종료
 - 통일독일의 대내·외적 완전주권 달성
 - 현 국경의 확인
 - 소련군의 한시적 주둔
 - 통일독일의 평화유지책임
 - 향후 4년 이내에 독일병력을 370,000명으로 감축
- * 동 조약의 효력발생은 모든 당사국이 비준을 완료한 '91. 3. 15일.

공포 1990. 10. 13 발효 1990. 10. 14

**일부 위임조치에 관한 1990년 10월 9일자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정부간의 협정에 대
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Abkommen vom 9. Oktober 1990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über einige überleitende Maßnahmen

Gesetz vom 9. 12. 19 BGBl I, Nr.48, S.1654

- o '90. 10. 9 Bonn에서 소련군의 구동독과 동베를린의 신
설 5개 연방주내 한시적 주둔을 늦어도 '94년말까지로
한다는 사항과 관련된 재정문제에 관한 규정
 - 총재정규모 120억 DM의 마련
 - 78억 DM : 주택건설계획
 - 30억 DM : 주둔비용의 일부부담
 - 10억 DM : 수송비용의 일부부담
 - 2억 DM : 직업전환교육계획
 - 소련군 주둔비용의 소련측 재원조달을 위해 상환
기간 5개년의 무이자 차관 30억 DM 마련
 - 소련군이 사용하던 부동산의 반환
 - Wismut 독·소주식회사의 해체

공포 1990. 12. 29 발효 1990. 12. 30

소련군의 독일연방공화국내 한시적 주둔에 관한 조건 및
철군계획의 방법에 관한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
주의공화국연방 간의 1990년 10월 12일자 조약에 대한 비
준법률

Gesetz zu dem Vertrag vom 12. Oktober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über die Bedingungen des befristeten
Aufenthalts und die Modalitäten des planmäßigen Abzugs der
sowjetischen Truppen aus dem Gebie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esetz vom 90. 12. 21 BGBl II, Nr.1, S.256

- '90. 10. 12 Bonn에서 서명된 조약의 비준
- 구동독지역과 동베를린의 신설 5개 연방주내 소련군의
한시적 주둔을 '94년 말까지로 한다는 현실적 문제와 그
방법에 관한 해결방안 규정
 - 가동훈련 등 주둔지역내 군사활동
 - 부동산 및 비행장 이용, 수송수단
 - 환경보호
 - 군인과 군속의 출·입국문제
 - 소송 및 사법공조
 - 소련군 부대근무자의 고용관계
 - 조약체결당사국의 손상 및 제3자의 손상에 대한 책
임
 - 견해차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독·소 중
재위원회의 구성

공포 1991. 1. 12 발효 1991. 1. 13

1990년 11월 9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의 우호선린협력에 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Vertrag vom 9. November 1990 über gute Nachbarschaft, Partnerschaft und Zusammenarbeit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Gesetz vom 9. 5. 31 BGBl II, Nr.15, S.702

- o '91. 11. 9 Bonn에서 서명된 동 조약에 대한 비준
 - 국경의 신성불가침
 - 무력사용 포기
 - 병력 및 군비 감축
 - 양국간 협력 확대, 특히 경제, 산업, 과학·기술, 환경보호 분야
 - 사증발급절차의 간소화
 - 문화교류
 - 독일계 소련시민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
 - 불법적으로 반출되었거나 실종된 문화재의 반환
 - 독일에 설치된 소련기념물의 보호

공포 1991. 6. 8 발효 1991. 6. 9

1990년 11월 9일 독일연방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의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분야의 광범한 협력 추진에 관한 조약에 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Vertrag vom 9. November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über die Entwicklung einer umfassenden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Wirtschaft, Industrie, Wissenschaft und Technik
Gesetz vom 9. 7. 2 BGBl II, Nr.19, S.798

- '90. 11. 9 Bonn에서 서명된 구동독과 소련간의 경제관계 처리 및 통일독일과의 장기적인 경제협력 추진에 관한 조약의 비준
 - 통일조약 제29조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을 구동독지역의 구조개선 등을 통해 구체화
 - 구동독지역내 소련 상품의 전통적 유입 및 소련내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EC의 과도기 규정
- 다음과 같은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조건의 조성
 - 환경보호, 에너지, 산업, 화폐교환, 제3국을 통한 협력, 과학·기술협력, 무역장벽제거, 수출보장, 거래자들을 위한 활농 용이화, 경제정보의 교환, 미시경제적 자문에 관한 연수교육

공포 1991. 7. 11 발효 1991. 7. 12

1991년 5월 16일자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간의 독·소채광주식회사의 활동종료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Abkommen vom 16. Mai 1991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Union der Sozialistischen Sowjetrepubliken über die Beendigung der Tätigkeit der Sowjetisch-Deutschen Aktiengesellschaft Wismut
Gesetz vom 91. 12. 12 BGBl II, Nr.31, S.1138

- o '91. 5. 16 Chemnitz 에서 서명된 동 조약에 대한 비준
 - 독·소채광주식회사의 공동활동 중지
 - 폐광 및 기업정비에 관한 기초 조성
 - 소련소유 주식의 독일연방공화국에의 무상 이양
 - '62. 12. 7일자 동독과 소련간 협정의 폐기
 - 독·소채광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
 - 구동독지역에 적용되던 기업권의 적용 및 내제된 재산의 등기부 기록

공포 1991. 12. 17 발효 1991. 12. 18

**1990년 11월 19일자 유럽 제재식병력에 관한 비준법률
(KSE 조약)**

Gesetz zu dem Vertrag vom 19. November 1990 über
konventionelle Streitkräfte in Europa (KSE-Vertrag)

Gesetz vom 91. 12. 12 BGBl II, Nr.32, S.1154

- '90. 11. 19 파리 CSCE 정상회담에서 서명된 동 조약에 대한 비준
- 유럽내 5대 중요 대형무기의 개념 확정 및 최대 보유 수치 규정
 - 전차 40,000 대
 - 장갑차 60,000 대
 - 대포 40,000 문
 - 전투기 13,600 대
 - 공격용 헬리콥터 4,000 대
- 조약상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검증체계의 확립
 - 정보 교류 및 사찰 기록
- 전해차를 해결하고 개별규정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자문 기구의 설치
- CSCE 전 회원국을 망라하는 통신망의 설치
- 조약상 중요한 정치적 3대 선언
 - 독일의 육군과 공군병력을 345,000명, 그리고 육해공 전체병력을 최대 370,000명으로 제한
 - 모든 회원국은 병력을 증강하지 않는다는 의무
 - 해군소유 지상전투기 보유대수 제한

공포 1991. 12. 20 발효 1991. 12. 21

**1990년 11월 14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폴란드공화국간의
기존국경 인정에 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Vertrag vom 14. November 1990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estätigung der zwischen ihnen bestehenden
Grenze

Gesetz vom 91. 12. 16 BGBl II, Nr.33, S.1328

- o '90. 11. 14 Warschau에서 서명된 동 조약에 대한 비준
 - Oder 강과 Neiße 강을 중심으로 한 현 국경선 최
종승인
 - 국경의 신성불가침
 - 영토청구권의 배제

공포 1991. 12. 21 발효 1991. 12. 22

**1992년 5월 13일자 독일연방공화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
특정재산청구권 처리에 관한 협정에 대한 미준법률**

Gesetz zu dem Abkommen vom 13. Mai 1992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Vereinigten Staaten von Amerika über die
Regelung bestimmter Vermögensansprüche

Gesetz vom 92. 12. 21 BGBl II, Nr.46, S.1222

- o '92. 5. 13 Bonn에서 서명된 정부간 협정에 대한 미준
 - 구동독내 미국시민의 몰수재산 및 기타 재산손실에 대한 보상
- o 동 협정의 기본요소
 - 일괄보상
 - 급부의 2중 지불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권

공포 1992. 12. 23 발효 1992. 12. 24

독·폴간 내륙선박항해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Abkommen vom 8. November 1991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Republik Polen über die
Binnenschifffahrt

Gesetz vom 93. 4. 19 BGBl II, Nr.14, S.779

- '91. 11. 8 Warschau에서 서명된 동 협정의 비준
 - 독일과 폴란드간 내륙선박교통의 용이화
 - 동독과 폴란드가 체결한 '69년 및 '71년도 내륙선박
항해협정의 효력 정지

공포 1993. 4. 24 발효 1993. 4. 25

직접선거절차 변경에 관한 비준법률

Gesetz über die Zustimmung zur Änderung des
Direktwahlakts

Gesetz vom 93. 8. 13 BGBl II, Nr.29, S.1242

- o '93. 2. 1 Brüssel에서 EC가 공포한 직접선거절차 제2조의 개정에 관한 결정의 비준
 - 통독으로 인해 유럽의회 독일의원수를 현재의 81명에서 99명으로 증원
 - 기타 대·중규모 회원국의 의원수 약간 증원

공포 1993. 8. 20 발효 1993. 8. 21

1990년 9월 25일과 1991년 9월 23일자 독일주둔 연합국 병력의 법적지위에 관한 각서교환 및 1990년 9월 25일자 베를린관련 특정문제 처리에 관한 합의에 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n Notenwechseln vom 25. September 1990 und vom 23. September 1991 über die Rechtstellung der in Deutschland stationierten verbündeten Streitkräfte und zu dem Übereinkommen vom 25. September 1990 zur Regelung bestimmter Fragen in bezug auf Berlin

Gesetz vom 94. 1. 3 BGBl II, Nr.2, S.26

- '90. 10. 3부터 잠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된 4대 합의사항에 대한 조약법의 공포
 - 과거 서베를린에서 발생한 점령피해에 대한 보상
 - 민간인 근로자의 법적지위
 - 신연방주 및 베를린내 대지 계속 사용
- '90. 9. 25자 북대서양조약 체결당사국 간의 '51. 6. 15자 각국 주둔병력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에 대한 각서 교환 및 '59. 8. 3 자 동 협정에 대한 추가협정과 이에 따른 합의사항
 - NATO 병력주둔규정의 효력 계속
 - 구동독 지역내 연합국 주둔병력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
- '90. 9. 25자 프랑스, 영국, 미국 병력의 베를린내 한시적 주둔에 관한 각서 교환
- '90. 9. 25자 베를린관련 특정문제 처리에 관한 합의
 - 점령권을 연방권으로 하는 과도기 규정

공포 1994. 1. 13 발효 1994. 1. 14

**1993년 3월 18일자 나토 병력주둔규정 추가협정 개정 및
기타 합의사항에 관한 협정에 대한 비준법률**

Gesetz zu dem Abkommen vom 18. März 1993 zur
Änderung des Zusatzabkommens zum NATO-
Truppenstatut und weiteren Übereinkünften
Gesetz vom 94. 9. 28 BGBl I, Nr.47, S.2594

- o '93. 3. 18 Bonn에서 서명된 '59. 8. 3일자 NATO 병력주
둔규정에 대한 추가협정을 독일통일 달성 이후 독일법
의 현재상태에 맞도록 일원화시킨다는 합의사항에 대한
비준

공포 1994. 10. 12 발효 1994. 10. 13/ 1982. 5. 23

2. 연방내무부 소관

정주민과 이주민의 잠정적주거지 확정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estlegung eines vorläufigen
Wohnortes für Aussiedler und Übersiedler
Gesetz vom 89. 7. 6 BGBl I, Nr.35, S.1378

- 새로 수용할 정주민과 동독출신 이주민에 대한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
- 자기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까지 각 주를 통한 주거지의 임시지정
- 임시지정 이후 2년이 되면 효력이 정지되며 동 법률의 유효기간은 3년임

공포 1989. 7. 14 발효 1989. 7. 14

정주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착지원금 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Anpassung von Eingliederungsleistungen für
Aussiedler und Übersiedler

(Eingliederungsanpassungsgesetz - EinglAnpG)

Gesetz vom 89. 12. 22 BGBl I, Nr.61, S.2398

- 정주민과 이주민의 정착 지원
- 실적상태의 정주민과 이주민을 위한 12 개월간 정착금 지원 보장
 - 단, 출신국에서 최소 5개월간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었을 것
- 독일어 과정 및 불가피한 직업훈련교육 참가시 정착금의 계속 지급
- 독일어 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중의 불가피한 비용 지급
- 가구 손상에 대한 총액 산정 및 이에 상당하는 급부 지급
- 이주민에 대한 소득한계 폐지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고용촉진법 §242의 삽입, 조기정년퇴직법 §2, 노년기 비상근근무법 §2, 연방실향민법 §74, §90a, §94, 부담조정법 §237, §295, 난민지원법 §7, §8, 전쟁포로보상법 §5, 구속자지원법 §1 Abs.5, §9a, §9c, §25a, 주택건설법 §25 Abs.1, §26 Abs.2, 주택수당법 §16, 소득세법 §7c, §10a Abs.4, §52 Abs.22 등 개정

공포 1989. 12. 29 발효 1990. 1. 1

연방선거법에 관한 제9차 개정법률

Neu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hlgesetzes

Gesetz vom 90. 6. 11 BGBl I, Nr.27, S.1015

- 제12대 연방의회 선거시 Berlin 지역에 직선제 도입
 - Berlin지역 의원 22명 선출에 대한 특별규정 폐기
- 연방의회 의원수를 519명에서 512명으로 축소,
259개 선거구를 256개 선거구로 당분간 축소

공포 1990. 6. 20 발효 1990. 6. 21

수용법 폐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des Aufnahmegesetzes
Gesetz vom 90. 6. 26 BGBl I, Nr.30, S.1142

- '50. 8. 22자 수용법 및 '51. 6. 11자 수용법 시행령을 '90. 7. 1부로 폐기
- 난민지원법에 입각한 이주민에 대한 특수급부 제공의 종료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난민지원법 §1, §20, 부담조정법 제2차 시행령 §1 Abs.2 Nr.1 등개정

공포 1990. 6. 28 발효 1990. 7. 1

제1차 전독연방의회총선의 준비와 시행을 위한 1990년 8월 3일자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의 조약 및 1990년 8월 20일자 변경조약에 따른 법률 (연방선거법)

Gesetz zu dem Vertrag vom 3. August 1990 zur Vorbereitung und Durchführung der ersten gesamtdeutschen Wahl des Deutschen Bundestages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wie dem Änderungsvertrag vom 20. August 1990

Gesetz vom 90. 8. 29 BGBl II, Nr.31, S.813

- '90. 8. 3 Bonn에서 서명된 선거조약의 비준
 - 최초의 전독총선을 위해 연방선거법의 적용 영역을 동독의 각주로 확대, 일원화된 법적근거 마련
 - 연방의회 의원수를 519명에서 656명으로 증원
 - 선거구를 Mecklenburg-Vorpommern주, Brandenburg주, Sachsen-Anhalt주, Sachsen주, Thüringen주와 동Berlin에도 분배 (제257 -328 선거구)
 - 최초의 전독총선에 대비하여 각 정당간의 연합공천명단 작성 허용
 - Berlin을 하나의 주로 취급
 - 연방선거법에 확정시켜 놓은 기존의 각종 기한과 일정을 단축
- 관련사항: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90. 10. 25, BGBl I, Nr.60, S.2423)
 - 5% 의회진출 차단조항과 연합공천조항의 동·서독 구분 적용

공포 1990. 9. 1 발효 1990. 9. 2

연방법의 (서)베를린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leitung von Bundesrecht nach
Berlin(West)
(Sechstes Überleitungsgesetz)
Gesetz vom 9. 9. 25 BGBl I, Nr.50, S.2106

- 지금까지 베를린에 부분적으로만 적용되었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연방권한을 (서)베를린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베를린을 기타 연방지역과 대등한 상태로 함
- 재난보호 확대에 관한 법률 발효
- 통일조약에 명기된 철도관련 규정 발효
- 연방항공안전청에 관한 법률 발효
- 독일조약, NATO 병력주둔규약 및 기타 NATO 합의사항 폐기
- 상해보험 관련규정 폐기
- 베를린주 소재 각 행정부처 근무자의 법적 신분규정 폐기
- 제국무기법, 제부행정법 §22, 증류주 독점에 관한 법률 §183 등 폐기

공포 1990. 9. 29 발효 1990. 10. 3(베를린에 관한 연합국
유보권 폐기시점)

연방선거법 및 정당법에 관한 제10차 개정법률

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hl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Gesetz vom 9. 10. 8 BGBl I, Nr.52, S.2141

- '90. 9. 29자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연방선거법 개정
 - '90. 10. 3 이전 동·서독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동·서독 지역 선거의 분리 실시에 따른 의회진출 차단 조항의 분리적용 확정
 - 구동독 지역에 본부를 둔 각 정당과 정치단체의 후보자명단 상호연계 허용
- 선거비용 보조에 관한 규정 조정
- 연방선거법 §53의 개정

공포 1990. 10. 10 발효 1990. 10. 11

연방이사비용법

Bundesumzugskostengesetz

Gesetz vom 90. 12. 11 BGBl I, Nr.68, S.2682

- 구 내독 국경에서 근무하던 세관원에 대한 규정 삽입
- 구동독 체류 상주대표부에 관한 특별규정의 폐기
- 신연방주 Bonn 대표부 종사자 권한의 동등화

공포 1990. 12. 18 발효 1990. 1. 1/ 1991. 1. 1

통일조약에 있어서 난민처리관련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s Verhältnisses von
Kriegsfolgengesetzen zum Einigungsvertrag
Gesetz vom 91. 12. 20 BGBl I, Nr.67, S.2270

- 통일조약에 명시된 신연방주 정주민 (Aussiedler)에 대한 난민처리 관련 규정의 적용기간을 '92. 12. 31까지 연장함으로써 정주민들이 신연방주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함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실향민법, 부담조정법, 구속자지원법, 포로병보상법 등

공포 1991. 12. 28 발효 1992. 1. 1

구동독국가보위부 문서에 관한 법률 (슈타지문서관리법)

Gesetz übe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tasi-Unterlagen-Gesetz - StUG)
Gesetz vom 91. 12. 20 BGBl I, Nr.67, S.2272

- 구동독국가보위부 문서를 연방국가문서전담관에서 통합 관리
- 해당자들의 정보요구권 무제한 허용
- 슈타지 요원 및 관련자들의 정보요구권 제한
- 공식기관 및 비공식기관들의 문서 활용에 관한 규정
 - 국가보위부가 남겨 놓은 서류철에 대한 법원과 검찰청의 열람권
 - 의회조사위원회의 문서활용권
 - 관계기관의 문서조회 신청이 있을 경우 연방전담관의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검토
- 형사소추기관의 문서활용 제한
- 해당자와 제3자에 관한 자료에 대한 언론기관의 접근 금지
- 해당자와 제3자에 관한 인사관련 정보의 익명화에 관한 규정
- 불이익 발생 금지
- 「연방국가보위부 문서전담관(가옥관청)」이라는 연방기관 설치

- 문서보관은 분산하되 운영은 중앙관리체제로 함
- 국가보위부 활동에 관한 역사적, 정치적, 법률적 재조명
- 정치교육 및 학술연구를 위한 지원
- 언론, 방송, TV에 있어서의 슈타지 문서의 활용
- 신연방주에 주립 국가보위부 문서전담관 설치
- 통일조약 부속문서 I, II장 B II Nr.2 b (연방문서관리법 관련) 규정 폐기

공포 1991. 12. 28 발효 1991. 12. 29

**병력감축에 따른 연방국방부 소관분야 공무원 수 조정에
관한 법률 (연방군공무원조정법)**

Gesetz zur Anpassung der Zahl der Beamten im
Geschäftsbereich des Bundesministers der Verteidigung an
die Verringerung der Streitkräfte
(Bundeswehranpassungsgesetz - BwBAnpG)
Gesetz vom 91. 12. 31

- 연방군 병력감축에 따라 '97. 12. 31 까지 구연방지역내
공무원을 최소 4,862명 감원
- 연방군근무 공무원으로서 타분야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5세부터 신청에 따라 조기 정년퇴직 할
수 있도록 함
- '97. 12. 31자로 동 법률의 효력 정지

공포 1991. 12. 31 발효 1992. 1. 1

의원법 관련 제14차 개정법률

Vier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Abgeordneten-
gesetzes

Gesetz vom 92. 1. 20 BGBl I, Nr.3, S.67

- 의원법 §44b의 삽입
 - 연방의회 의원이 구 동독국가보위부의 공식·비공식
요원이었는지 또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한 검토
 - 의회내부의 검토절차에 관한 연방의회의 원칙 규정
- 의회내 검토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선거분과·의원면책분
과·의사진행분과 위원회의 관할권 부여

공포 1992. 1. 25 발효 1992. 1. 26

철도경찰 및 항공안전업무의 연방국경수비대 이양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tragung der Aufgaben der Bahnpolizei
und der Luftsicherheit auf den Bundesgrenzschutz
Gesetz vom 92. 1. 23 BGBl I, Nr.5, S.178

- 연방철도의 수사 임무를 포함한 철도경찰 관련 업무 및 항공교통 안전업무를 연방국경수비대가 인수
- 신연방주에 이미 존재하던 법적 상황에 대한 완전한 법률 동화
- 형법전 §12, Abs.2에 입각한 혐의가 있을 경우 연방국경수비대가 형사소추 분야의 철도경찰 업무 수행
- 주립경찰의 관할권 제한
- 새로운 과제에 적합한 연방국경수비대의 조직 개편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국경수비대법 §§1, 2, 33, 43, 47, 항공교통법 §§19b, §20a, §29, §31, §32의 개정, 철도 건설 시행 및 운행에 관한 규정 §55부터 §61까지의 폐기 및 §64a의 개정

공포 1992. 1. 31 발효 1992. 4. 1

1991년도 연방 및 주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조정에 관한 법률 (1991년도 연방봉급 및 연금조정법)

Gesetz über die Anpassung von Dienst- und Versorgungsbezügen in Bund und Ländern 1991
(Bundesversorgungs- und -versorgungsanpassungs-gesetz 1991 - BBVAnpG 91)
Gesetz vom 92. 2. 21 BGBl I, Nr.8, S.266

- '91. 3. 1 부터 연방, 주, 지자체 공무원, 법관, 군인 및 연금 수령자의 봉급을 6% 인상
- 하급직 및 중급직의 소득 개선
- 상위직 승진제도 개선
- 지구법원 및 검찰청의 보직인원 증원
- 구동독지역 행정구축에 참여하는 구서독 출신에 대해 초과수당 지급
- 근무연한 및 연령에 관한 규정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봉급법과 그 부속문서, 공무원개관법, 연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관련 법률 등 개정

공포 1992. 2. 27 발효 각 조항별 1990. 1. 1 - 1994. 1. 1

연방문서관리법에 관한 개정법률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archivgesetzes
Gesetz vom 92. 3. 13 BGBl I, Nr.14, S.506

- 구동독공산당(SED), 대중조직, 제후정당의 서류를 연방 문서관리청으로 이양
- 동독에서 만들어진 모든 문서는 연방정부에서 관리
- 연방문서관리청 산하에 「동독의 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 관리재단」을 Berlin에 설치
- 재단설립에 관한 연방내무부 장관의 시행령 마련
 - 재단의 임무와 조직
 - 문서의 활용
 - 재단의 소장문서는 30년간의 보호기간 내에 사용 금지

공포 1992. 3. 27 발효 1992. 3. 28

**통일조약에 입각한 공공행정에 있어서의 해고가능성
연장에 관한 법률**

Gesetz zur Verlängerung der Kündigungsmöglichkeiten i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nach dem Einigungsvertrag
Gesetz vom 92. 8. 20 BGBl I, Nr.41, S.1546

- 통일조약 부속문서 I, XIX장 A III Nr.1 Abs.4의 개정
 - 필요 여부에 따른 해고기간을 2년간 연장
 - 신연방주내 행정기관 근무인력의 감원 용이화
 - 인건비 절약

공포 1992. 9. 1 발효 1992. 9. 2

**직업군인과 공무원의 타분야 진출촉진에 관한 법률
(보직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anderweitigen Verwendung
von Berufssoldaten und Beamten
(Verwendungsförderungsgesetz)
Gesetz vom 92. 12. 21 BGBl I, Nr.58, S.2091

- 근무인력관리법과 연방군근무 공무원조정법에 따라 직업
군인과 연방군근무 공무원들의 타분야 진출 촉진
 - 군인 신분의 전환을 수월하게 하는 경력 관련 규정
 - 근무 변경으로 발생하는 특별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최고 15,000 DM의 일회성 보조금 지급 보장
 - 연금관련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규정
- 구동독 인민군의 단기 근무병에 대한 일회성 진출금 지급

공포 1992. 12. 24 발효 조항별 1991. 1. 1 - 1992. 12. 25

난민처리법 조정에 관한 법률 (난민처리조정법)

Gesetz zur Bereinigung von Kriegsfolgensetzen
(Kriegsfolgenbereinigungsgesetz - KfbG)

Gesetz vom 92. 12. 21 BGBl I, Nr.58, S.2094

- 신연방주내 정주민의 수용을 '92. 12. 31 이후 장기적으로 함
- 정주민을 독일전역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연방실향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
- 정주민에 대한 급부금의 삭감
- 정주민 유입의 통제
- 연방행정청이 매년 발급하는 수용증 발급 현황을 '91년 및 '92년 평균수치에 해당하도록 제한 (약 220,000명)

공포 1992. 12. 24 발효 1993. 1. 1

공무원연금법 관련 개정법률

Gesetz zur Änderung des Beamtenversorgungsgesetzes
Gesetz vom 92. 12. 21 BGI I, Nr.58, S.2088

- 경험있는 공무원이 신연방주에 투입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는 기관과 인수하는 기관간의 연금 부담의 분배
 - 만 50세이상 공무원으로서 '90. 10. 3 부터 '93. 12. 31 사이에 파견될 경우
- 군인 파견시에도 동 규정 적용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공무원연금법 §107a - §107c의 삽입, 공무원봉급법 §73, 군인연금법 §92a의 개정, §92b - §92c의 삽입

공포 1992. 12. 24 발효 1992. 10. 1/ 1992. 12. 25

1992년도 연방 및 주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조정에 관한 법률 (1992년도 연방봉급 및 연금조정법)

Gesetz über die Anpassung von Dienstbezügen
und Versorgungsbezügen in Bund und Ländern 1992
(Bundesbesoldungs- und -versorgungsanpassungsgesetz
1992 - BBVAnp G 92)
Gesetz vom 93. 3. 23 BGBl I, Nr.10, S.342

- '92. 5. 1부터 연방, 주, 지자체 공무원, 법관, 군인 및 연금수령자의 봉급을 5.4% 인상
- 봉급급수 A13부터 A16까지, 그리고 봉급규정 B, C, R은 '92. 6. 1부터 인상
- '92. 1. 1부터 연수생 봉급을 150 DM 인상
- 봉급 급수 A1로부터 A9까지의 공무원과 군인 및 간호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회성 지급액 750 DM의 보장
- 봉급 급수 A10부터 A12까지는 일회성 지급액 600 DM 지불 보장
- 연간 휴가비를 200 DM 인상
- 구동독 국경수비대 요원에 대한 연금가산기간 규정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봉급법의 여러조항, 고충처리시행령 §4, §9, 휴가비법 §2, §4, 공무원연금법 §12, 군인연금법 §24의 개정

공포 1993. 3. 27 발효 조항별 1991. 3. 1 - 1993. 3. 28

유럽의회선거법 관련 제2차 개정법률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uropawahlgesetzes
Gesetz vom 93. 11. 11 BGBl I, Nr.60, S.1863

- o 유럽의회 파견 독일연방공화국 의원수를 81명에서 99명으로 증원
- o 신연방주와 Berlin에 대한 과도기 규정
 - 연방선거법 관련규정(공천명단 제출) 및 연방헌법 재판소법관련 개정법률(선거 검토, 이의신청에 관한 기간 규정)의 적용
- o 유럽의회선거법의 여러조항 개정

공포 1993. 11. 19 발효 1993. 4. 1/ 1993. 11. 20/ 1994. 5. 1

**연방방송국과 베를린 리아스방송국의 재편법
(방송재편법)**

Gesetz über die Neuordnung der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und des RIAS Berlin(Rundfunkneuordnungsgesetz)

Gesetz vom 93. 12. 20 BGBl I, Nr.71, S.2246

- 도이칠란트퐁크(Deutschlandfunk)와 베를린 리아스방송국(RIAS Berlin)을 도이칠란트라디오 (Deutschlandradio) 라는 공법인으로 전환
- 연방 방송국설치에 관한 법률 및 베를린 리아스방송국설치법 폐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 1993. 12. 28 발효 1993. 12. 29/ 1994. 1. 1

슈타지문서관리법 변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des Stasi-Unterlagen-Gesetzes
(StUÄndG)

Gesetz vom 94. 2. 22 BGBl I, Nr.11, S.334

- 구동독 슈타지문서관리 연방진담판에게 구동독 중앙주민 등록부에 있는 특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부여
 - 상기 정보를 경찰수사기관 및 통일과 연관된 형사 처벌행위 소추기관(ZERV)에 제공
- 동 규정은 '9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슈타지문서관리법 §2 개정

공포 1994. 3. 3 발효 1994. 3. 4

**상업통계법 및 임금통계법 개정에 관한 법률
(통계변경법)**

Gesetz zur Änderung des Handels- und Lohn-
statistikgesetzes

(Statistikänderungsgesetz - Stat.ÄndG)

Gesetz vom 94. 3. 2 BGBl I, Nr.13, S.384

- 상업통계법 §1 및 임금통계법 §13 개정
- 대학통계법 §2, §3, §5의 개정
 - 대학생 수 파악업무를 매 학기별에서 겨울학기
제한
- 농업통계법 §20과 §25의 개정
 - 농경분야 노동력 조사를 매 2년 주기로 실시
 - '94년부터 신연방주에도 시행

공포 1994. 3. 10 발효 1994. 3. 11

주민신고법 관련 제1차 개정법률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Melderechts-
rahmengesetzes (MRRG)

Gesetz vom 94. 3. 11 BGBl I, Nr.17, S.527

- 국외체류 미성년자의 주거지에 관한 규정 및 공동숙소에
서 생활할 경우 신고의무에 관한 새로운 규정
- 종합병원 환자명단에 대한 안보기관의 열람권 제한
- 신연방주내 수동식 신고명부에 대한 경찰의 한시적 열람
권 마련
- 주민신고법의 여러조항 개정

공포 1994. 3. 19 발효 1994. 3. 20

**독일통일 완성을 위한 1991년 6월 20일자 독일연방의회
결의사항의 실현에 관한 법률 (베를린-본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s Beschlusses des
Deutschen Bundestages vom 20. Juni 1991 zur
Vollendung der Einheit Deutschlands
(Berlin/Bonn-Gesetz)
Gesetz vom 94. 4. 26 BGBl I, Nr.27, S.918

- Berlin을 독일연방의회와 연방정부 소재지로 한다는
것을 명문화
- Berlin과 Bonn에 연방부서를 정착시키면서 연방수도
Berlin과 연방도시 Bonn 간의 공정한 업무분담을 규정
- Berlin 시와 Bonn 시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연방기관 및 관련인력을 Bonn 시로 이동시킴으로써
Bonn 지역을 보완
- 연방관보를 통해 수도이전시기 공지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이전대상기관의 소재지와 관계되는 11개 법률 개정

공포 1994. 5. 6 발효 1994. 5. 7

연방의회선거법에 관한 제12차 개정법률

Zwöl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hlgesetzes
Gesetz vom 94. 5. 19 BGBl I, Nr.29, S.993

- 주간 경계의 변경에 따른 조치로서 Brandenburg 내 제 282 선거구에 있는 Holzdorf-Ost 주거지역을 Sachsen-Anhalt 내 제288 선거구로 재편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의회선거법 §3의 개정

공포 1994. 5. 19 발효 1993. 11. 16

구속자지원법 및 기타 법률에 관한 제10차 개정법률

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Häftlingshilfegesetzes
und anderer Gesetze

Gesetz vom 94. 6. 8 BGBl I, Nr.34, S.1214

- 구 정치범지원재단의 재산을 2005년까지 적치
- '96. 1. 1부터 동 재단의 관할권을 신연방주내 SED 불법 분야까지 확대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구속자지원법 여러조항, 형사법적보상법 §3, §25, 소득세법 §3의 개정

공포 1994. 6. 15 발효 1994. 6. 16/ 1996. 1. 1

슈타지문서관리법 관련 제2차 개정법률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asi-
Unterlagen-Gesetzes (2. StUÄndG)

Gesetz vom 94. 7. 26 BGBl I, Nr.48, S.1748

- 슈타지문서관리 연방전담관에게 슈타지 원본의 복사본을
고지할 의무 부과
- 복사본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
- 연구와 미디어용 정보제공에 대해 수수료 징수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슈타지문서관리법 §7, §42, §45의 개정

공포 1994. 7. 30 발효 1994. 7. 31

교사봉급규정 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von Vorschriften der
Lehrerbesoldung

Gesetz vom 94. 8. 23 BGBl I, Nr.57, S.2186

- 동독법에 따라 교사자격을 취득한 신연방주내 교사들을 위한 봉급규정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봉급법 §79, 연방봉급시행령 A와 B, 제2차 봉급과도기 시행령 §4, §7의 개정

공포 1994. 8. 31 발효 1991. 7. 1/ 1994. 9. 1

1994년도 연방 및 주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조정에 관한 법률 (1994년도 연방봉급 및 연금조정법)

Gesetz über die Anpassung von Dienst- und Versorgungsbezügen in Bund und Ländern 1994

(Bundesbesoldungs- und -versorgungsanpassungsgesetz - BBVAnpG 94)

Gesetz vom 94. 8. 24 BGBl I, Nr.58, S.2229

- o '94. 10. 1부터 공무원, 법관, 군인, 연금수령자의 봉급을 2% 인상
- o 봉급급수 A9 이상, 그리고 봉급급수 B, C, R은 '95. 1. 1부터 적용
- o 중급직 초기근무처를 봉급급수 A6으로 상향조정
- o 고위직 승진시 근무처의 범위 확대
- o 관련 법률규정 개정
 - 연방봉급법 부속문서, 고충처리보조금 시행령 §4, §19a, 초과수당지불 시행령 §4, 제2차 봉급과도기 시행령 §2, §3, §14 개정

공포 1994. 9. 2 발효 1994. 10. 1/ 1995. 1.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기타 연금관련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des Beamtenversorgungsgesetzes,
des Soldatenversorgungsgesetzes sowie sonstiger
versorgungsrechtlicher Vorschriften

(Beamnt VGÄndG 1993)

Gesetz vom 94. 9. 20 BGBl I, Nr.63, S.2442

- 통일후 연금관련 과도기 규정 (공무원연금과도기시행령
및 군인연금과도기시행령)을 구연방지역에서 흡수
- 고용당국 변경시 연금부담 분배에 관한 규정
- 직업군인의 연령제한에 따르는 퇴직금 규정
- 신연방주내 인력지원조치의 연장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의 여러조항, 자녀양육
보조금법 §1, 연방연금법 §73, 공무원연금과도기시
행령 §2, 군인연금과도기시행령 §2, 제2차 예산구조
법 Art.2 §2의 개정

공포 1994. 9. 28 발효 조항별 1991. 3. 1 - 1994. 10. 1

신연방주의 증명서발급처 해체에 관한 법률

Gesetz zur Auflösung der Urkundenstellen in den Ländern
Brandenburg, Mecklenburg-Vorpommern, Sachsen,
Sachsen-Anhalt und Thüringen (UrkStAufLG)
Gesetz vom 94. 11. 23 BGBl I, Nr.83, S.3474

- '99. 12. 31까지 증명서발급처를 해제하도록 신연방주에
권한 부여
- 과도기 업무는 호적기관(Standesämter)에서 취급토록 조
치

공포 1994. 11. 29 발효 1994. 11. 30

3. 연방법무부 소관

기업사유화에 있어서의 장애제거 및 투자촉진을 위한 법률

Gesetz zur Beseitigung von Hemmnissen bei der Privatisierung von Unternehmen und zur Förderung von Investitionen

Gesetz vom 91. 3. 22 BGBl I, Nr.54, S.766

- 인민공유기업의 사유화와 몰수된 기업의 반환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고 신연방주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
- 재산을 보상하기 이전에 반환한다는 원칙의 고수
- 투자용이화조치 계속 시행
- 기업반환에 대한 제한 조치
- 특별재산관리를 위해 「연방미해결재산관리청」 신설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미해결재산문제처리법(재산법) 및 동독내 특별투자에 관한 법률(투자법)의 여러조항, DM-대차 대조법의 여러조항 개정 및 삽입, 구 인민공유재산 귀속확정에 관한 법률(재산귀속법)의 여러조항 개정, 신탁법 §7, §12의 개정, 토지등기부 시행령 §125 삽입, 주택소유법 §3, §32의 개정, 동독환경개관법 Art.1 §4 개정

공포 1991. 3. 15 발효 1991. 3. 29

신탁청관리 기업체의 분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Spaltung der von der Treuhandanstalt verwalteten Unternehmen

Gesetz vom 91. 4. 5 BGBl I, Nr.22, S.854

- 신연방주내 사유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함
- 신탁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자본회사의 분할
- 분할된 재산을 공증인의 원본을 통해 새로운 자본회사로 이양
-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의 결의사항을 상업등기부에 등록
- 자본회사 공지목록 작성에 관한 규정
- 부채에 대한 책임을 기업분할 이전의 상태로 제한
- 기업분할의 경우 경영협의회의 과도기 임무 부과
- 기업경영진이 기업분할을 거부했을 경우 기업경영진에 대한 의무사항
- 관련 법률규정 개정
 - 민법전 §613a Abs.3, 민법전시행령 art.232 §5의 개정

공포 1991. 4. 11 발효 1991. 4. 12

입양권관련 기한변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adoptionsrechtlicher Fristen

(Adopt Frist G)

Gesetz vom 91. 9. 30 BGBl I, Nr.55, S.1930

- 민법전시행법 Art.234 §13 개정
 - 구 동독법률에 따른 입양제도의 재검토 또는 취소
 - 특히, 육친의 동의없이 친권재판을 통해 강제입양된 경우
- 변경기한은 '93. 10. 2까지

공포 1991. 10. 2 발효 1991. 10. 3

DM-대차대조표법 변경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des D-Markbilanzgesetzes
Gesetz vom 91. 12. 20 BGBl I, Nr.67, S.2290

- o DM-대차대조표법 §57 Abs. 1, 2, 4 개정
 - 신연방주내 자본회사의 상업등기 신고기간과 조합의 조합등기 신고기간을 '92. 12. 31까지 연장

공포 1991. 12. 28 발효 1991. 12. 29